

2020년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본 공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실되고 충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1. 3. 3

대표이사 이 창 구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consisting of stylized, overlapping strokes that form the characters '이' and '창구'.

목 차

	Page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1. 지배구조 일반	1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1
나. 지배구조 현황	2
(1) 조직도	2
(2) 지배구조의 특징	3
(3) 지배구조 현황(요약)	3
다. 관련 규정	4
2. 이사회	5
가. 역할(권한과 책임)	5
(1) 총괄	5
(2) 구체적 역할	5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5
(나) 정관 변경	6
(다) 예산 및 결산 승인	7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8
(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수립 · 평가	8
(바)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9
(사)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10
(아) 기타	10
나. 구성(이사)	11
(1) 총괄	11
(2) 구성원	12
(3) 요약	15
다. 활동내역	16
(1) 활동내역 개요	16

(2) 회의 개최내역	17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27
(1) 이사회 평가	27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28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28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0
가. 역할(권한과 책임)	30
(1) 대표이사 후보 추천	30
(2) 감사위원 후보 추천	31
(3) 사외이사 후보 추천	31
나. 구성	31
다. 선임기준	33
(1) 후보 자격요건	33
(가) 대표이사 후보 자격요건	33
(나) 감사위원 후보 자격요건	33
(다) 사외이사 후보 자격요건	33
(2) 후보 추천 절차	33
(가) 대표이사 후보 추천 절차	34
(나) 감사위원 후보 추천 절차	34
(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절차	34
(3) 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34
(가) 대표이사 업무수행 평가 방식	35
(나) 상근감사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35
(다) 사외이사 업무수행 평가 방식	35
라. 활동내역 및 평가	35
(1) 활동내역 개요	35
(2) 회의 개최내역	35
(3) 평가	37
마. 임원 후보 추천 관련사항	38

(1) 대표이사 후보	38
(2) 감사위원 후보	38
(가) 후보자 인적사항	38
(나) 후보제안자	38
(다) 후보자 추천 사유	39
(라)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40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 결과	40
(3) 사외이사 후보	41
(가) 후보자 인적사항	41
(나) 후보제안자	42
(다) 후보자 추천 사유	42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43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44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 결과	46
(4)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 결과	47
(5)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47
(6)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48
(가)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49
(나)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49
(다) 후보군 현황	49
(7)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50
(8)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51
(가) 사외이사 지원부서 운영 현황	51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관련 업무 보고 및 지원 내용	51
4. 사외이사 활동 · 보수 등	53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53
(1)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53

(가) 이사회	53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63
(다) 감사위원회	64
(라) 위험관리위원회	67
(마) 보수위원회	69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70
(가) 사외이사 디디에 뚜슈	70
(나) 사외이사 라케쉬 뱅게일	70
(다) 사외이사 조세훈	71
(라) 사외이사 탁승훈	71
(마) 요약	72
나. 임원책임보상보험 가입 현황	72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74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74
(1) 사외이사 디디에 뚜슈	74
(2) 사외이사 라케쉬 뱅게일	75
(3) 사외이사 조세훈	76
(4) 사외이사 탁승훈	76
마. 기부금 등 지원내역	77
바. 사외이사 평가	77
(1) 평가 개요	77
(2) 내부평가	77
(가) 내부평가 개요	77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78
(3) 외부평가	79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 내역	79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79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80
(가) 지원부서 현황	80

(나) 지원부서 수행 업무	80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80
(1) 사외이사 디디에 뚜슈	80
(2) 사외이사 라케쉬 뱅게일	81
(3) 사외이사 조세훈	81
(4) 사외이사 탁승훈	82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82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82
5. 대표이사 경영승계	85
가. 대표이사 경영승계 내부규정	85
나.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90
(1) 일반	90
(2) 비상계획	94
다. 대표이사 자격충족 여부	94
(1) 소극적 요건	94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94
라. 대표이사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95
(1) 대표이사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95
(2) 대표이사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경과	95
마.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95
바. 이사회 의 대표이사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96
사. 대표이사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 현황	96
6.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99
가. 역할(권한과 책임)	99
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구성	99
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00
(1) 활동내역 개요	100
(2) 회의 개최내역	101

7. 감사위원회	107
가. 역할(권한과 책임)	107
(1) 총괄	107
(2) 구체적 역할	107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107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108
(다) 상임감사위원 관련 사항	108
(라) 재무제표 검토 등	109
(마) 기타	109
나. 구성(감사위원회 위원)	110
(1) 총괄	110
(2) 구성원	110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11
(1) 활동내역 개요	111
(2) 회의 개최내역	111
(3) 평가	114
라. 감사보조조직 등	114
8. 위험관리위원회	116
가. 역할(권한과 책임)	116
(1) 총괄	116
(2) 구체적 역할	116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116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116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117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117
(마) 기타	117
나. 구성(위험관리위원회 위원)	117
(1) 총괄	117
(2) 구성원	118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18
(1) 활동내역 개요	118
(2) 회의 개최내역	118
(3) 평가	120
9.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121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23
1. 보수위원회	123
가. 총괄	123
나. 구성	123
(1) 총괄	123
(2) 구성원	124
다. 권한과 책임	124
(1) 총괄	124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심의·의결	125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125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126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126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	127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127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128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수 대상자의 결정	128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29
(1) 의사결정 절차	129
(2) 활동내역 개요	130
(3) 회의 개최내역	130

(4) 평가	131
2. 보수체계	132
가. 주요사항	132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132
(가) 회사 전체 또는 중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132
(나)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132
(다)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132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132
(가)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132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 정책	133
(다) 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134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134
(가)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134
(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134
(다)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135
(라)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135
(4)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135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135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135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136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136
(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136
나. 보수 세부사항	136
(1) 임직원 총보수	136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137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37
(1) 보수의 구분(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137
(2) 성과보수의 형태(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137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137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137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 별로 구분)	138
(6) 이연보수의 조정	138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138
[첨부]	
가. 관련 규정	
(1)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주) 정관	139
(2)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주) 이사회규정	148
(3)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주) 지배구조 내부규범	154
(4)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주) 감사위원회규정	177
(5)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183
(6)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주) 보수위원회규정	185
(7)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주) 위험관리위원회규정	188
나.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후보 검토보고서	190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신한자산운용(주) (舊 신한 BNP 파riba자산운용(주), 이하 “당사”)는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주주,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경영안정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겸비한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경영승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주 및 투자자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과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상법 등 관련법령 범위 내의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개진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진을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정직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경영진의 주요 업무집행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효율적인 견제를 위해 대표이사의 선임·해임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경영진 견제기능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사회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말 기준 이사회 60%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

2020년말 현재 이사회 구성원 5명은 모두 금융 분야 전문가로 회계분야 2명, 경영분야 2명, 법률분야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뿐만 아니라 필요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정기이사회가 4회, 임시이사회가 10회 개최되어 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였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내역, 사외이사의 주요 활동내역 등 지배구조에 대한 보고서는 당사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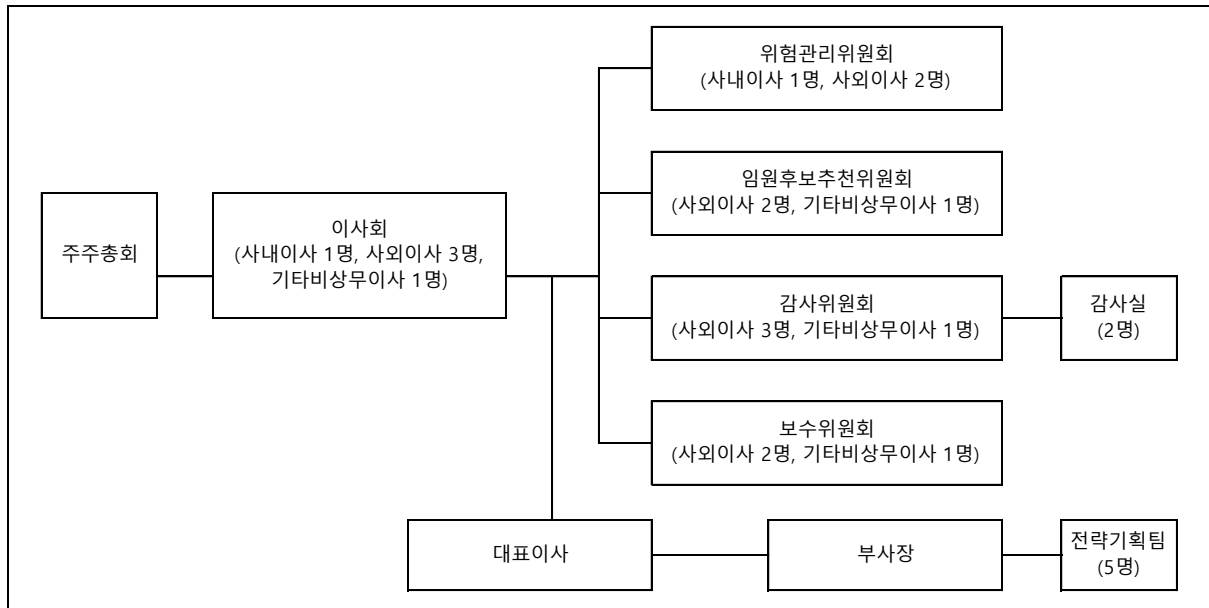
(공개내용 확인 사이트 주소 : <http://www.shinhanfund.com>)

(협회 사이트 주소 : <http://www.kofia.or.kr>)

당사는 경영환경 및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 ·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에 대해서도 매년 적정성 평가를 거쳐 수정 · 보완하고 있습니다.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



(2) 지배구조의 특징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 경영실적 등 중요사항을 보고 받고, 정관 및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전략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본금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권한 등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사외이사 수와 비율이 3명, 60%로 주주 추천 및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사회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이사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4개의 이사회내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3) 지배구조 현황(요약)

<2020년 12월말 기준>

내부기관	주요역할	구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의장 (이름/상임·사외·비상임 여부)	관련 규정
이사회	최고의결기구	3/5	이창구/상임	정관§31 이사회규정§5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임원후보추천	2/3	조세훈/사외	정관§32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5
감사위원회	회사의 회계 및 업무 감사	3/4	조세훈/사외	정관§32 감사위원회규정§4
위험 관리위원회	회사의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 운용 및 기타 제반 리스크관리	2/3	조세훈/사외	정관§32 위험관리위원회규정§5
보수위원회	경영진 등의 평가 보상체계 운용 및 관리	2/3	조세훈/사외	정관§32 보수위원회규정§2

다. 관련 규정

- 첨부 1. 신한 BNP 파riba자산운용(주) 정관
- 첨부 2. 신한 BNP 파riba자산운용(주) 이사회규정
- 첨부 3. 신한 BNP 파riba자산운용(주) 지배구조 내부규범
- 첨부 4. 신한 BNP 파riba자산운용(주) 감사위원회규정
- 첨부 5. 신한 BNP 파riba자산운용(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 첨부 6. 신한 BNP 파riba자산운용(주) 보수위원회규정
- 첨부 7. 신한 BNP 파riba자산운용(주) 위험관리위원회규정

2. 이사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 이사회는 건전경영의 기반 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영진 경영활동의 기준 · 절차 · 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합리적 경영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다양한 전문역량과 식견을 보유한 사외이사와 금융분야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에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 내외의 전문인력 등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경영계획 · 실적 등 중요사항을 보고 받고, 정관 및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전략 및 주요 운용에 관한 사항, 자본금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이사회규정 제 5 조, 제 13 조 등에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4 조에서도 이사회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 내용은 당사 정관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 경영목표 · 전략의 수립 및 평가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4 조제 1 항제 1 호는 '자회사를 포함한 경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 13 조제 1 항제 4 호 A 목에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사업계획, 재무계획, 예산계획 등을 포함한 경영계획을 수립 · 평가 ·
최종 승인하며, 구체적 수립 · 평가에 필요한 실무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 년도 경영목표 · 전략은 2019 년 10 월에 경영진에서 초안을 마련한
후 양 주주인 신한금융지주회사 및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Holding
에 사전보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2019 년 12 월 개최된 제 24 기 제 14 차
임시이사회에서 2020 년도 경영목표 · 전략을 승인하였습니다.

(나) 정관 변경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4 조제 1 항제 2 호는 '정관 등 중요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 13 조제 1 항제 2 호에
정관 및 중요 규정의 제정 및 폐지
결의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6 년 8 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내규에
반영하고자 2016 년 7 월에 제 6 차, 제 7 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이후, 동 법과 당사 내규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2017 년 3 월, 제 22 기 제 2 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비롯한 지배구조 관련
주요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정관의 주요 개정사항은 이사회 구성인원, 이사의 임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이사회내 위원회 명칭,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결의방법 등에
대한 변경이었습니다. 상기 정관 변경 내용은 2017 년 3 월 31 일 개최된 제 21 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되어 정관에 반영되었습니다.

당사는 2018 년 11 월부터 시행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사 정관에 반영하는 정관 개정 안건을 2019 년 3 월 개최된 제 24 기 제 5 차

정기이사회에서 승인하였습니다. 상기 정관 변경 내용은 외부감사인 선정 권한이 감사위원회로 이관되는 내용으로, 동 정관 개정 안건은 2019 년 3 월 29 일 개최된 제 23 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되어 정관에 반영되었습니다.

(다) 예산 및 결산 승인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4 조제 1 항제 3 호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 13 조제 1 항제 4 호 B 목은 보다 구체적으로 '경영진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 년도 예산은 2020 년도 경영목표 · 전략과 함께 2019 년 12 월 개최된 제 24 기 제 14 차 임시이사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당사의 예산은 자본예산과 비용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본예산은 유 · 무형자산에 대한 예산이며, 비용예산은 영업비용의 수수료비용, 판관비와 관리비, 기타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에 대한 예산입니다.

2019 년도 예산편성은 전년도 실적, 인원증가 등 예산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 · 외적 환경요인들을 참고하여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편성하였고 이사회 의 심의 · 의결을 받아서 확정하였습니다. 2020 년도 주요부문 예산규모는 자본예산이 전기실적 추정 대비 약 521.1% 증가한 26.4 억원이며, 비용예산 중 영업비용 부문은 전기실적 추정 대비 약 14.8%(78 억원) 증가한 605 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 년 2 월 4 일 개최된 제 26 기 제 5 차 임시이사회에서 대표이사는 2020 년도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하였고, 동 이사회에서 2020 년도 제 25 기 재무제표(별도 및 연결)를 심의 · 결의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별도기준 재무제표와 홍콩법인을 포함한 연결기준 재무제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주재무제표인 연결기준 영업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수익은 전기대비 5.48%(46 억원) 증가한 889 억원, 영업비용은 전기대비 1.74%(0.93 억원) 증가한 540 억원, 당기순이익은 전기대비 15.48%(36 억원) 증가한 267 억원을 실현하였습니다.

당사의 배당금(안)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2020 년도 제 25 기 결산 배당은 무배당으로 결의하였습니다.

(라) 해산 · 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4 조제 1 항제 4 호는 '조직의 중요한 변경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사결정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 13 조제 1 항제 4 호 D 목에 '조직·인사·급여에 관한 기본 체계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E 목에 '점포의 이전 및 폐쇄', F 목에 '자본시장법상의 신규사업에의 진출', 제 13 조제 1 항제 5 호 A 목에 '업무용 동산, 부동산의 취득, 처분의 경우', D 목에 '해산, 영업양도 및 합병승인', E 목에 '기타 중요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이사회 의사결정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20 년 1 월 6 일 제 25 기 제 1 차 임시이사회에서 조직개편 승인 안건을 심의 · 결의하였습니다. 동 이사회에서는 CMO 를 신설하고, 영업·마케팅·상품 및 리서치 부문을 재편하고, 대체자산운용본부에서 인프라운용 부문을 별도 센터로 분리하는 조직개편안을 승인하였습니다.

(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수립 · 평가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4 조제 1 항제 7 호, 제 8 호는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회사의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사결정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 13 조제 1 항제 7 호 D 목, E 목에 동일 내용을 이사회 의사결정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19 년 9 월 20 일 개최된 제 24 기 제 11 차 정기이사회에서 내부통제기준 개정의 건을 심의 · 결의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표준

내부통제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개정의 주된 내용은 준법감시체제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2016 년 8 월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당사 이사회내 위험관리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회사의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리스크 수준의 결정, 적정투자 한도 및 손실 허용한도 승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그 밖에 리스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 · 의결 합니다.

(바)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 · 정책의 수립 · 평가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4 조제 1 항제 5 호, 제 9 호는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수립 · 평가 및 상시적인 최고경영자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 13 조제 1 항제 4 호, 제 6 호에 동일 내용을 이사회 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2020 년 1 년간 이사회 의장 선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상정의 건 등을 승인하여 상법에서 정하는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들을 정하였습니다. 2015 년 3 월 임시이사회를 통해 제정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은 이사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개정되었는데, 3 월 개최된 제 25 기 제 5 차 정기 이사회에서는 보수위원회 결의대상에 업무집행책임자를 추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부분을 개정하였으며, 6 월 개최된 제 25 기 제 9 차 정기이사회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신한금융지주회사 종합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운영에 자회사 이사회 의 역할 강화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였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동 규범 및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 능력, 업무 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최고경영자로 선임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9년 3월 29일 개최된 제 24기 제 6차 임시이사회에서 이창구 이사를 최고경영자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제 23기 제 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최고경영자 대표이사 후보자로 추천한 이창구 이사에 대하여 관계 법규와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이창구 후보자를 제 23기 정기주주총회에 이사 후보로 추천하였고, 이창구 후보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재선임 된 후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사) 이해상충행위 관리 · 감독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4조제 1항제 6호는 '대주주 · 임원 등과 회사 간 이해상충행위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 13조제 1항제 6호 B목에 '상법 제 398조에 따른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9년 12월 개최된 제 24기 제 12차 정기이사회를 통해 2020년 계열사간 거래 승인 계획(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22일 개최된 제 25기 제 2차 임시이사회에서 신한에이아이와의 투자자문 계약, 3월 24일 개최된 제 25기 제 5차 정기이사회에서 신한아이타스와의 일반사무업무위탁, MP 및 보고서 서비스 계약, 4월 3일 개최된 제 25기 제 7차 임시이사회에서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캐피탈과의 증권시장안정펀드 운용 관련 계약, 6월 16일 개최된 제 25기 제 9차 정기이사회에서 신한금융지주와의 신한 상표 등 사용 계약, 신한금융투자와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7월 23일 개최된 제 25기 제 10차 임시이사회에서 신한에이아이와의 투자자문 계약, 8월 21일 개최된 제 25기 제 11차 임시이사회에서 신한아이타스와의 가상통합펀드 기준가격산정업무 계약, 9월 15일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신한아이타스와의 인터페이스 변경 및 인력지원 계약, 12월 16일 개최된 제 25기 제 13차 정기이사회에서 네오플렉스와의 출자 계약을 승인하였습니다.

(아) 기타

당사 이사회는 2020 년 총 14 번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아닌 경영진 선임 및 이사회내위원회 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심의 ·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업계 동향 및 실적과 감사 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

나. 구성(이사)

(1) 총괄

당사 이사회의 총수는 정관 제23조에 따라 6인 이내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는 상법,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말 현재 이사회는 모두 5명의 이사(대표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이외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2명이 재선임되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경우 임기는 2 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 년 이내로 하고, 총 재임기간이 6 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정관 §25). 이는 상임이사의 임기를 단기로 설정할 경우 책임경영이 어렵고 단기수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장기로 설정할 경우 사외이사에 대한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정관에 명시된 자격을 충족해야 선임되고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정관 §26).

2020 년말 현재 이사의 전문분야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모든 이사가 금융분야 전문가이며, 경영분야 2 명, 회계분야 2 명, 법률분야 1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으로는 이사회 진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창구 대표이사가 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아닌 자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경우 이사회 의 독립성과 경영진 견제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조세훈 사외이사는 2020 년 3 월 24 일 제 25 기 제 6 차 임시이사회에서 선임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 구성원

(가) 이사회 의장: 이창구

- 1) 직위: 대표이사
- 2) 구분: 상임
- 3) 이사회, 위원회 역할: 이사회 의장,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 4) 임기: 2019.03.29 ~ 2021.01.15 / 연임 2021.01.15 ~ 2021.12.31
- 5) 학력: 영동고등학교 졸업 (1979)
한양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1984)
- 6) 주요 경력: 신한 PB 서울파이낸스센터 지점장 (2002)
신한은행 인력개발실장 (2007)
신한은행 비서실장 (2008)
신한은행 중국 조사역 (2010)
신한은행 성수동 금융센터 센터장 (2012)
신한은행 WM 본부장 (2014)
신한은행 부행장 (그룹 WM 사업부문장) (2016)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주) 대표이사 (2019.03 ~ 현재)

(나) 이사: 조세훈

- 1) 직위: 사외이사

- 2) 구분: 비상임
- 3) 이사회, 위원회 역할: 선임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보수위원회 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 4) 임기: 2020.03.24 ~ 2022 년 개최 정기주주총회일
- 5) 학력: 남성고등학교 졸업 (1982)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88)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졸업 (2016)
- 6) 주요 경력: 동원증권 국제부 (1988 ~ 1997)
한남투자신탁 국제부 (1997 ~ 1998)
현대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팀장 (1998 ~ 2006)
신한 BNP 파riba투자신탁 CIO (2006 ~ 2008)
이룸투자자문 대표이사 (2008 ~ 현재)

(다) 이사: 디디에 뚜슈 (Didier TOUCHE)

- 1) 직위: 사외이사
- 2) 구분: 비상임
- 3) 이사회, 위원회 역할: 감사위원회 위원,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 4) 임기: 2016.02.03 ~ 2019.03.29 / 연임 2019.03.29 ~ 2020.03.24 /
연임 2020.03.24 ~ 2021.01.15
- 5) 학력: European Business School – Finance (1982)
DESC(Diplome d'Etudes Comptable Superieur) (1986)
- 6) 주요 경력: Head of Market Risk APAC,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2010)
Head of Market Risk APAC & Emerging,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2013 ~ 현재)

(라) 이사: 라케쉬 뱅게일 (Rakesh VENGAYIL)

- 1) 직위: 사외이사
- 2) 구분: 비상임

- 3) 이사회, 위원회 역할: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 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4) 임기: 2019.03.29 ~ 2021.01.15
- 5) 학력: Bachelor of Science, Brennen College, Calicut University, India (1991)
Honours Diploma in System Management, 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India (1994)
Post Graduate Diploma in Finance Management, Maharashtra Institute
of Technology-MITDSE, India (2009)
Master in Business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 Belk
College of Business, United States (2009)
- 6) 주요 경력: COO & CFO, Asia, Middle East, Africa & Turkey, Fortis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2008)
COO, Asia Pacific , BNP Paribas Investment Partners Asia Ltd,
Hong Kong (2010)
COO, Asia Pacific & Emerging Markets, BNP Paribas Investment
Partners UK Ltd, London (2014)
Deputy CEO Asia Pacific,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Asia Ltd,
Hong Kong (2017.08 ~ 현재)

(마) 이사: 김지욱

- 1) 직위: 기타비상무이사
- 2) 구분: 비상임
- 3) 이사회, 위원회 역할: 이사회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 4) 임기: 2020.01.01 ~ 2021 년 개최 정기주주총회일
- 5) 학력: 영동고등학교 졸업 (1988)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2)
연세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졸업 (1996)
- 6) 주요 경력: 삼성증권 국제금융팀 과장 (2002)
HSBC IB 본부 본부장 (2004)

대우증권 고유자산운용팀 부장 (2006)
삼성증권 IB 본부 이사 (2009)
신한금융지주 전략기획팀 부부장 (2013)
신한금융지주 전략기획팀 팀장 대우 (2015)
신한은행 CIB 사업부 팀장 (2016)
신한은행 일임자산운용부 부장 (2016)
신한금융지주 글로벌전략팀, 글로벌자본시장팀 팀장 (2017)
신한금융지주 경영혁신팀 본부장 (2019)
신한금융지주 전략기획팀 본부장 (2020)
신한금융투자 부사장 (2021 ~ 현재)

(바) 이사: 탁승훈

- 1) 직위: 사외이사
- 2) 구분: 비상임
- 3) 이사회, 위원회 역할: 선임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보수위원회 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 4) 임기: 2017.12.14 ~ 2019.03.29 / 연임 2019.03.29 ~ 2020.03.24
- 5) 학력: 대성고등학교 졸업 (1979)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3)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1992)
- 6) 주요 경력: 조흥은행 신탁업무부 부부장 (2001)
신한은행 연수중앙 지점장 (2004)
신한은행 염창동 지점장 (2006)
신한은행 언주로 지점장 (2009)
신한은행 압구정중앙 지점장 (2012)

(3) 요약 (2020년 12월말 기준)

성명	상임/ 사외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이창구	상임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신한은행 부행장	19.03.29	2021.12.31	21 개월	위험관리위
조세훈	사외	선임사외이사 감사위원	이룸투자자문 대표이사	20.03.24	22 년 개최 정기주총	9 개월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추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디디에 뚜슈	사외	사외이사 감사위원	Head, Market Risk APAC & Emerging, BNPP AM	16.02.03	2021.01.15	59 개월	감사위 위험관리위
라케쉬 뱅게일	사외	사외이사 감사위원	Deputy CEO, APAC, BNPP AM. Asia	19.03.29	2021.01.15	21 개월	감사위, 임추위 보수위
김지욱	-	기타비상무이사	신한금융지주 전략기획팀 본부장	20.01.01	21 년 개최 정기주총	12 개월	감사위원회
탁승훈	사외	선임사외이사 감사위원	신한은행 압구정중앙지점장	17.12.14	2020.03.24	27 개월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추위원회 위험관리위 위원장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020년에는 총 14 회의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모든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결의에 필요한 이사 4/5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사의 평균 참석률은 98%

(정기이사회 100%, 임시이사회 96.7%) 입니다. 이사회 개최 전 이사회 의안을 사전에 공유하여 이사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을 통해 이사들의 이해를 돕고 있어 이사회에서 활발한 토의가 가능하였으며, 그 결과 2020 년도 이사회에 부의된 총 51 개의 결의안건 중 43 개 안건이 가결되었고, 8 개 안건은 결의가 유보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5기 제1차 임시이사회

2020년 1월 6일 오후 4시 40분 [안건통지일: 2019년 12월 27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창구	디디에 뚜슈	라케쉬 뱅게일	탁승훈	김지욱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					
4. 의결안건						
제1호 안건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의 건	-	-	-	-	-	유보
제2호 안건 경영진운영규정 개정의 건	-	-	-	-	-	유보
제3호 안건 경영진 평가 및 보수규정 개정의 건	-	-	-	-	-	유보
제4-1호 안건 이사 아닌 경영진 박태형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4-2호 안건 이사 아닌 경영진 김충선 선임의 건	-	-	-	-	-	유보
제5호 안건 조직개편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5기 제2차 임시이사회

2020년 1월 22일 오후 5시 [안건통지일: 2020년 1월 14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창구	디디에 뚜슈	라케쉬 뱅게일	탁승훈	김지욱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						
4. 의결안건						
제1호 계열사간 거래 승인의 건 - 신한에이아이 투자자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25기 제3차 임시이사회

2020년 2월 4일 오후 5시 [안건통지일: 2020년 1월 28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창구	디디에 뚜슈	라케쉬 뱅게일	탁승훈	김지욱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특이의견 없음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보고						
4. 의결안건						
제1호 2019년 제24기 (2019.1.1~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호 2019년도 제24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	----	----	----	----	----

(라) 제25기 제4차 임시이사회

2020년 3월 10일 오후 5시 45분 [안건통지일: 2020년 2월 24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창구	디디에 뚜슈	라케쉬 뱅게일	탁승훈	김지욱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특이의견 없음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위원회 평가보고서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내부감사부서 평가 결과 보고 3.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보고						

(마) 제25기 제5차 정기이사회

2020년 3월 24일 오후 4시 [안건통지일: 2020년 3월 13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창구	디디에 뚜슈	라케쉬 뱅게일	탁승훈	김지욱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특이의견 없음						
1. 업계 동향 및 당사 실적 2. 감사업무 보고 3.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 4. 2019년도 내부통제체계·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보고 5. 2019년 재산상 이익의 제공 현황 및 적정성 점검 결과 보고 6. 감사위원회 의결 및 보고내용 보고 7. 2019년도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평가 보고 8. 2019년도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의 업무수행 실적 및 2020년 계획 보고						

9.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대응현황 및 BCP 플랜
10.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보고

4. 의결안건

제1호 안건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호 안건 보수위원회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3호 안건 경영진평가 및 보수에 관한 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4호 안건 PS 운영규정 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5호 안건 계열사간 거래 승인의 건 - 신한아이타스 일반사무업무위탁계약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6호 안건 계열사간 거래 승인의 건 - 신한아이타스 MP서비스 계약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7호 안건 계열사간 거래 승인의 건 - 신한아이타스 보고서서비스 계약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8호 안건 최소영업자본액비율한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9호 안건 조세훈 후보자 겸직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10호 안건 제2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11호 안건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상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제25기 제6차 임시이사회

2020년 3월 24일 오후 5시 20분 [안건통지일: 2020년 3월 16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창구	디디에 뚜슈	라케쉬 벵게일	조세훈	김지욱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4. 의결안건						
제1호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¹⁾	-주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호 선임사외이사 선임의 건 ²⁾	찬성	찬성	찬성	-주1)	찬성	가결
제3호 보수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³⁾	찬성	찬성	찬성	-주1)	찬성	가결
제4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⁴⁾	찬성	찬성	찬성	-주1)	찬성	가결
제5호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⁵⁾	찬성	-주1)	찬성	-주1)	찬성	가결
제6호 고유재산의 “신한BNPP TDF 및 TIF 시리즈” 에 대한 Loss Cut 10% rule 적용 유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 1) 본인 심의 의결권 제한

1) 이창구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2) 조세훈 이사 선임사외이사로 선임

3) 조세훈 이사 보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4) 조세훈 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5) 조세훈 이사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디디에 뚜슈 이사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임

(사) 제25기 제7차 임시이사회

2020년 4월 3일 오후 4시 30분 [안건통지일: 2020년 3월 31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창구	디디에 뚜슈	라케쉬 뱅크일	조세훈	김지욱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4. 의결안건						
제1호 계열사간 거래 승인의 건 -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증권시장안정펀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제25기 제8차 임시이사회

2020년 5월 19일 오후 4시 [안건통지일: 2020년 5월 8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창구	디디에 뚜슈	라케쉬 뱅크일	조세훈	김지욱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특이의견 없음						
1. Volcker Rule 준수 연간 확인서 보고						
4. 의결안건						
제1호 고유재산의 “신한BNPP 안심지속형 TDF(H) 시리즈”에 대한 임의시당 24억원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자) 제25기 제9차 정기이사회

2020년 6월 16일 오후 5시 20분 [안전통지일: 2020년 6월 1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창구	디디에 두슈	라케쉬 벵게일	조세훈	김지욱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특이의견 없음						
1. 업계 동향 및 당사 실적 2. 감사업무 보고 3.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보고 4. 감사위원회 의결 및 보고내용 보고 5. 보수위원회 심의 및 결의내용 보고 6. 위험관리위원회 심의 및 결의 내용 보고 7.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심의 및 결의 내용 보고 8. 고객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보고						
4. 의결안건						
제1호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호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3호 총 시당 한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4호 계열사간 거래 승인의 건 - 신한상표 등 사용계약에 따른 브랜드 사용료 산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5호 계열사간 거래 승인의 건 - 신한금융투자 사무실 임대차 계약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차) 제25기 제10차 임시이사회

2020년 7월 23일 오후 4시 [안건통지일: 2020년 7월 13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창구	디디에 뚜슈	라케쉬 뱅크일	조세훈	김지욱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특이의견 없음						
1. 감사위원회 의결 및 보고내용 보고 2. 위험관리위원회 심의 및 결의내용 보고						
4. 의결안건						
제1호 계열사간 거래 승인의 건 - 신한에이아이 투자자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카) 제25기 제11차 임시이사회

2020년 8월 21일 오후 4시 5분 [안건통지일: 2020년 8월 7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창구	디디에 뚜슈	라케쉬 뱅크일	조세훈	김지욱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
3. 보고안건						
-						
4. 의결안건						
제1호 계열사간 거래 승인의 건 - 신한아이타스 가상통합펀드 기준가격산정업무 계약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타) 제25기 제12차 정기이사회

2020년 9월 15일 오후 5시 15분 [안건통지일: 2020년 8월 31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창구	디디에 뚜슈	라케쉬 벵게일	조세훈	김지욱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특이의견 없음						
1. 업계 동향 및 당사 실적 2. 감사업무 보고 3.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보고 4. 그룹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및 육성 후보군 보고 5. 고객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보고						
4. 의결안건						
제1호 계열사간 거래 승인의 건 - 신한아이타스 인터페이스 변경 계약 및 인력지원 계약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호 대체자산 사업부문 영업 양도 승인의 건	-	-	-	-	-	유보
제3호 배당 정책 변경의 건	-	-	-	-	-	유보
제4호 Investment Advisory Agreement 해지의 건	-	-	-	-	-	유보
제5호 정관 개정의 건	-	-	-	-	-	유보
제6호 제25기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7호 제25기 임시주주총회 의안 상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파) 제25기 제13차 정기이사회

2020년 12월 16일 오후 4시 5분 [안건통지일: 2020년 12월 1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창구	디디에 뚜슈	라케쉬 벵게일	조세훈	김지욱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특이의견 없음						
1. 업계 동향 및 당사 실적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보고 3. 소송현황 보고 4. 자금세탁방지 활동 보고 5. 2020년 이행보증금 연간 납입 실적 보고 6. 감사위원회 심의 및 결의내용 보고 7. 위험관리위원회 심의 및 결의 내용 보고 8.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심의 및 결의내용 보고 9. 고객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보고						
4. 의결안건						
제1호 계열사간 거래 승인의 건 - 네오플렉스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호 2021년 계열사간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3호 고유재산의 “신한BNPP 평생소득 TIF 혼합투자신탁”에 대한 임의시당 8억원 연장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4호 2021년 이행보증금 연간 납입 총액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5호 2021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6호 2021년 예비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하) 제25기 제14차 임시이사회

2020년 12월 23일 오후 5시 [안건통지일: 2020년 12월 18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창구	디디에 뚜슈	라케쉬 뱅게일	조세훈	김지욱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4. 의결안건						
제1-1호 이사 아닌 경영진 박태형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1-2호 이사 아닌 경영진 류승헌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1) 이사회 평가

이사회는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8조(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의거 연1회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이사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평가항목에는 이사회 개최 빈도의 적정성, 회의시간의 적정성, 안건의 범위와

깊이의 적정성, 당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정보수령 여부 등이 포함되며, 이 평가는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합니다.

당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평가제도 도입을 2016년 12월 제21기 제10차 정기이사회에서 승인하여 외부업체에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대한 평가는 2021년 1월에 위탁하여 수행하였습니다.

평가는 이사회 위원 전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동 평가결과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은 이사회 운영에 반영하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각 위원회가 당사의 주요 의사결정기구 및 경영진 견제기구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매년 초 정기주주총회일 전까지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면평가 방식의 사외이사 평가는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을 평가지표로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며, 그 결과는 사외이사 재선임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공시되며 주주총회에 보고됩니다. 평가등급은 5 등급으로 분류하여 차등 배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5년 6월 제 20기 제 8차 정기이사회에서 사외이사 평가제도 도입을 결의한 후, 매년 1월에 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기준은 본 연차보고서 4. 사외이사 활동 · 보수 등 - 바. 사외이사 평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당사는 이사회원의 원활한 운영과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 결정으로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가 아닌 자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에 의해 사외이사 중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 회의의 소집 및 주재,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20년 3월 제 25기 제 6차 임시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으로 이창구 대표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는 이창구 대표이사가 경영에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간 당사가 이사회원의 소집, 회의진행 및 안건 상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사외이사가 아닌 자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당사는 2020년 3월 24일 제 25기 제 6차 임시이사회에서 조세훈 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지배구조법 §13).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권한에 대해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11 조 및 동 위원회 규정 제 5 조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업에 대한 전문성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겸비한 역량있는 대표이사, 독립적이면서 당사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량과 전문성, 식견 및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 재무활동 등 감사업무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이 풍부한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3 인 이상 5 인 이내의 이사로 동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총 위원 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정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를 지원하여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내위원회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요건 등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후보군을 구성하며, 후보군의 관리 및 검증, 압축을 하고 최종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및 추천 결의 등 단계별로 임원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이사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2020 년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3 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였으며, 사외이사 후보군에 대한 관리 내역을 결의하였습니다.

(1) 대표이사 후보 추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최고경영자 대표이사 후보에 대하여 관계 법규와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합니다.

(2) 감사위원 후보 추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감사위원 후보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합니다.

(3) 사외이사 후보 추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에 대하여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람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에 추천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조에 명시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원칙 아래 관계 법규 또는 내규상 적극적 자격요건과 소극적 자격요건에 부합하고, 당사에 적합한 전문성과 식견 및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있으며, 상시적으로 사외이사 후보군을 발굴 ·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별(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후보군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범위 내 취득 가능한 공개정보의 모니터링을 통해 후보군의 소극적 자격요건 여부,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17 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이사회가 전문성에서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직업군 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추천경로(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주주, 외부자문기관, 지원부서 등)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소극적, 적극적 자격요건의 충족여부 검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내역을 연 2 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020년말 기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외이사 2 명과 기타비상무이사 1 명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사외이사인 위원 중 1 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019 년 3 월 29 일 개최된 제 24 기 제 6 차 이사회에서 라케쉬 뱅게일 사외이사, 탁승훈 사외이사, 한응구 기타비상무이사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2019 년 3 월 29 일 개최된 제 24 기 제 2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탁승훈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019 년 12 월 12 일 개최된 제 24 기 제 13 차 이사회에서 김지옥 기타비상무이사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020 년 3 월 24 일 개최된 제 25 기 제 6 차 이사회에서 조세훈 사외이사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2020 년 3 월 24 일 개최된 제 25 기 제 2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조세훈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020 년중 재임하였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2020 년말 기준)>

성 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등	선임일	임기만료일
조세훈	사외	위원장 / 사외이사	2020.03.24	22년 개최 정기주총
라케쉬 뱅게일	사외	위원 / 사외이사	2019.03.29	21년 개최 정기주총
김지옥	비상임	위원 / 기타비상무이사	2020.01.01	21년 개최 정기주총
탁승훈	사외	위원장 / 사외이사	2019.03.29	2020.03.24

다. 선임 기준

(1) 후보 자격요건

당사는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임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을 위하여 임원 후보의 자격요건에 관해 지배구조 내부규범과 정관에 규정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 내부규범 §16, §29, 정관 §26). 임원 후보자들은 관련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당사에서 정한 자격기준에도 부합하여야 합니다.

(가) 대표이사 후보 자격요건

본 연차보고서 5. 대표이사 경영승계 - 나.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 (1) 일반 - ① 대표이사 자격요건 참조

(나) 감사위원 후보 자격요건

감사위원은 지배구조법 제 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가 정하는 임원의 자격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감사위원 중 1 명은 지배구조법 제 19 조 및 시행령 제 16 조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합니다.

(다) 사외이사 후보 자격요건

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 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가 정하는 임원의 자격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더불어, 지배구조법 제 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 조가 정하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후보 추천 절차

당사는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임원선임을 위하여 임원후보 추천과 관련한 절차를 정관 및 이사회규정,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정하고 있습니다.

(가) 대표이사 후보 추천 절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 6 조에 의거하여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최고경영자 대표이사 후보에 대하여 관계 법규와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합니다.

(나) 감사위원 후보 추천 절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고 있으며, 감사위원 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과 감사위원 후보 추천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총 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절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 7 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또한, 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위원회는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추천서에 사외이사 평가결과 및 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며, 사외이사 평가 결과 해당 사외이사의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되는지 검토합니다.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23 조는 이사에 대한 평가 및 결과 활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평가결과는 연임시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이사의 경영성과 등의 평가는 보수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대표이사 업무수행 평가 방식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는 신한금융지주회사 보수위원회에서 심의 · 조정한 내용을 당사 보수위원회에서 확정합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는 계량적인 평가 외에 정성적인 평가를 병행하며, 신한금융지주회사 등 상위조직 단위의 업무성과와 연동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 상근감사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상근감사위원의 평가목표 설정 및 평가는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확정합니다.

(다) 사외이사 업무수행 평가 방식

당사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23 조에 따라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면평가 방식의 사외이사 평가는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을 평가지표로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연 1 회 실시하며, 그 결과는 사외이사 재선임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공시되며 주주총회에 보고됩니다. 평가등급은 5 등급으로 분류하여 차등 배점하고 있습니다.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0 년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3 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기간 중 부의된 결의안건 5 개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5기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0년 3월 24일 오후 3시 30분 [안건통지일: 2020년 3월 10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탁승훈	라케쉬 뱅게일	김지욱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특이의견 없음				
제1호.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4. 의결안건				
제1-1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후보 디디에 뚜슈 추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1-2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후보 조세훈 추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내역 결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5기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0년 3월 24일 오후 5시 30분 [안건통지일: 2020년 3월 10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조세훈	라케쉬 뱅게일	김지욱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제1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¹⁾	—주1)	찬성	찬성	가결
--	------	----	----	----

주1) 의결권 제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8조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자신이 후보가 되는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결권의 수는 출석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경우 당해 위원의 의결권 수는 재적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조세훈 위원장 선임

(다) 제25기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0년 12월 16일 오후 4시 [안건통지일: 2020년 12월 4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조세훈	라케쉬 뱅게일	김지옥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제1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내역 결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평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9조(이사회내 위원회) 제4항에 의거 연1회 이사회내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이사회내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당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평가제도 도입 승인을 2016년 12월 제21기 제10차 정기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0년도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2021년 1월에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되며, 2020년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동 평가에서 4등급(우수)를 받았습니다. 구체적 평가항목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시간의 적정성, 안건의 범위 및 깊이의 적정성, 직무수행의 충실성이 포함됩니다.

마. 임원 후보 추천 관련사항

(1) 대표이사 후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020년도에 최고경영자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2) 감사위원 후보

(가) 후보자 인적사항

가. 디디에 뚜슈 (Didier TOUCHE): 아래 (3) 사외이사 후보 항목 참조

나. 조세훈 : 아래 (3) 사외이사 후보 항목 참조

(나) 후보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성명	직위	학력	경력
탁승훈	사외이사 임추위 위원장	- 대성고등학교 - 연세대 경제학과 - 연세대 대학원 경제학	- 조흥은행 신탁업무부 부부장 - 신한은행 염창동 지점장 - 신한은행 연주로 지점장 - 前 신한은행 압구정중앙 지점장

(2) 후보자와의 관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인 탁승훈 후보제안자는 주주인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Holding 으로부터 디디에 뚜슈 후보자 추천을 받았으며, 디디에 뚜슈 후보자와 다른 특수관계는 없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인 탁승훈 후보제안자는 주주인 신한금융지주로부터 조세훈 후보자 추천을 받았으며, 조세훈 후보자와 다른 특수관계는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디디에 뚜슈 후보자는 1983년 프랑스 금융회사 PARIBAS에 입사 후 PB, 펀드 매니저, 리스크 본부장 등을 거친 30년 이상 금융업에 종사한 자로서 자산운용업 리스크관리 부분에 탁월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에서 아시아퍼시픽 및 이머징 지역 리스크 본부장으로 재직중이며, 2016년 2월부터 당사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하였으므로 그동안의 업무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여 회사의 경영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조세훈 후보자는 현재 이룸투자자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약 30년 이상의 금융회사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가진 금융전문가로, 그 동안의 업무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여 당사의 신뢰도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디디에 뚜슈 후보자는 주주인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Holding 이 자회사 경영관리를 위해 추천하였으며 2020년 3월 24일 제25기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조세훈 후보자는 주주인 신한금융지주가 자회사 경영관리를 위해 추천하였으며

2020년 3월 24일 제25기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충족여부	충족이유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없음
지배구조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당사 감사위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은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을 갖춘 자입니다. 위 감사위원 후보자들은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가 정한 자격요건에도 적합하였습니다.

(3) 본인 소명

감사위원 후보자에 대해서 이력서, 임원선임심사표 등을 받아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사항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 결과

디디에 뚜슈 후보자 및 조세훈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을 위해 2020년 3월 24일 제25기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 위원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들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이 당사의 신뢰 제고와 경영 합리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하여 후보자들을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후보자 디디에 뚜슈, 조세훈 추천에 대한 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3명 출석에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3) 사외이사 후보

(가) 후보자 인적사항

가. 디디에 뚜슈 (Didier TOUCHE)

- (1) 성명: 디디에 뚜슈
- (2) 출생연도 : 1959년
- (3) 출신학교 : European Business School (1982)
DESC (Diplome d'Etudes Comptable Superieur) (1986)
- (4) 경력
 - 1983~1987 Private Banker, Wealth Management, PARIBAS
 - 1987~2000 펀드 매니저, 단기채권 및 구조화상품 투자팀 부팀장, PARIBAS
 - 2000~2004 구조화상품 투자팀 부팀장,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 2004~2009 New Market 리스크 본부장,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 2010~2013 APAC Market Risk 본부장,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 2013~현재 Market Risk 본부장, APAC & Emerging Market,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 (5) 사외이사 경력 : “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주) 사외이사
 - ‘19년도 총 14회 개최된 이사회에 14회 참석(참석률 100%)

나. 조세훈

- (1) 성명: 조세훈
- (2) 출생연도 : 1963년
- (3) 출신학교 : 남성고등학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졸업
- (4) 경력 :
 - 동원증권 국제부 (1988 ~ 1997)

- 한남투자신탁 국제부 (1997 ~ 1998)
- 현대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팀장 (1998 ~ 2006)
- 신한 BNP 파riba투자신탁 CIO (2006 ~ 2008)
- 이룸투자자문 대표이사 (2008 ~ 현재)

(5) 사외이사 경력 : 없음

(나) 후보 제안자

가. 탁승훈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1) 인적사항

- ① 출생연도 : 1961년
- ② 출신학교 : 대성고등학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
- ③ 경력 : 위 내용 참조

(2) 후보자와의 관계

탁승훈 후보제안자는 2017년 12월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후 디디에 뚜슈 후보자와 당사의 이사회 활동을 같이 하였습니다. 탁승훈 후보제안자는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Holding 주주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 후보 디디에 뚜슈와 업무상 만남 외 다른 특수관계는 없습니다.

탁승훈 후보제안자는 신한금융지주 주주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 후보 조세훈 후보자와 특수관계는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디디에 뚜슈 후보자는 1983년 프랑스 금융회사 PARIBAS에 입사 후 PB, 펀드 매니저, 리스크 본부장 등을 거친 30년 이상 금융업에 종사한 자로서 자산운용업 리스크관리 부분에 탁월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에서 아시아퍼시픽 및 이머징 지역 리스크 본부장으로 재직중이며,

2016년 2월부터 당사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하였으므로 그동안의 업무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여 회사의 경영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조세훈 후보자는 현재 이룸투자자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약 30년 이상의 금융회사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가진 금융전문가로, 그 동안의 업무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여 당사의 신뢰도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디디에 뚜슈 후보자는 2016년 2월부터 당사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성 및 당사 신뢰도 제고 등을 이유로 2020년 3월 24일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조세훈 후보자는 현 이룸투자자문 대표이사로 업무 전문성 등을 이유로 2020년 3월 24일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1)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디디에 뚜슈 후보자는 당사의 주주 BNPP Asset Management Holding의 자회사인 BNPP Asset Management 의 현직 임직원입니다.

후보자 조세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 디디에 뚜슈, 조세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신한금융지주회사와 특수관계 없음)

(3) 임원과의 관계

후보자 디디에 뚜슈, 조세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당사 및 계열회사 임원과 특수관계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후보자는 당사 사외이사 후보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후보자가 최근 2년 이내 근무한 학교 또는 회사와 당사의 계열회사와는 여신거래가 없어 법령상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1) 소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충족여부	충족이유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당사는 법령에서 정한 사외이사 자격요건의 충족은 물론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6조 이사의 자격요건인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 및 책임성, 충실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㉞ 전문성

당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6조는 이사의 자격요건으로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디디에 뚜슈 후보자는 DESC(Diplome d'Etudes Comptable Superior)에서
고등회계 학위를 획득하고 PARIBAS 및 BNPP Asset Management 에서
임직원으로 30년이상 금융업, 특히 자산운용업에 종사하여 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PB, 펀드 매니저 등 자산운용업 실무경험이 있는 탁월한 리더로서 높은
명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자산운용업 리스크 관리 분야에 대한
실무경험을 검토해본 결과 후보자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금융 전문가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조세훈 후보자는 1988년 동원증권 국제부에 입사 후 한남투자신탁 국제부,
현대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팀장, 신한비엔피파리바투자신탁 CIO를 역임한 금융
전문가로 현 이룸투자자문 대표입니다. 동 후보자는 금융 전문가로서의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㉔ 직무공정성

당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6조는 이사의 자격요건으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디디에 뚜슈 후보자는 당사의 주주인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Holding 의
자회사인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의 임직원으로서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훈 후보자는 당사와 신한금융지주회사 계열사에 관련된 거래관계가 없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㉕ 윤리성, 책임성

당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6조는 이사의 자격요건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윤리의식이 투철하며 이사회 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여 당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㉔ 충실성

당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6조는 이사의 자격요건으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디디에 뚜슈 후보자는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등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참석률 또한 높아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훈 후보자는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4) 본인 소명

위 사외이사 후보자들에 대해서 이력서, 임원선임심사표 등을 받아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사항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후보자들은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탁월한 자들로 당사와 신한금융지주회사 계열사에 관련된 거래관계가 없으며 그 외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는 거래관계가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후보자들의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감안 시 사외이사 역할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디디에 뚜슈, 조세훈 후보자들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20년 3월 24일 제25기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2/3의 동의로 결의되며 디디에 뚜슈, 조세훈 후보 추천의 건은 재적위원 3명 중 3명 출석에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4)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제24기 정기주주총회일(2020.03.24) 기준 임기 만료가 도래한 사외이사는 총 2명이며 이 중 1명이 연임하였으며, 사외이사 평가 결과 연임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로서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사외이사명	재임기간	연임 여부	이사회등 출석율	평가 여부
디디에 뚜슈	2019.03.29~2020.03.24	연임	100%	우수(적합)

※ 재임기간 및 참석율은 FY2019년 정기주주총회일 기준임

(5)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 사외이사 후보 디디에 뚜슈 (Didier TOUCHE)
2020년 3월 24일 개최한 제25기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 추천 결의에 앞서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검토'에 관한 사항이 보고되었으며, 이에 따라 디디에 뚜슈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후보자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하였고,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원부서에서 수집한 자료 및 후보자가 활동하였던 이사회내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후보자가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항목별로 세밀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디디에 두슈 후보자는 당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평가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는 등 사외이사 후보로서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 사외이사 후보 조세훈

2020년 3월 24일 개최한 제25기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 추천 결의에 앞서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검토'에 관한 사항이 보고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세훈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후보자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하였고,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원부서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후보자가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항목별로 세밀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조세훈 후보자는 당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로서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6)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가)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당사는 주주, 임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받고 있으며, 추천된 후보군 중 관계 법령 및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자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하여 주주총회 의안으로 부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의거하여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내역에 관한 사항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당사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에는 소극적, 적극적 자격요건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를 위하여 주주, 지원부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말 후보군은 BNPP Asset Management Holding 주주 추천 2명(회계전문가 1명, 금융전문가 1명), 금융전문가 5명, 경제전문가 5명, 경영전문가 4명, 회계전문가 4명, 법률전문가 4명, 소비자보호 전문가 3명, 정보기술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후보군 현황

- 1차 결의일자: 2020년 3월 24일 제25기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분야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금융	7	23.3%	
경제	4	13.3%	
경영	4	13.3%	
회계	5	16.7%	
법률	4	13.3%	
소비자보호	3	10.0%	
정보기술	3	10.0%	
합계	30	100%	

※동일인이 복수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 대표 분야만 계산(이하 동일)

추천경로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주주	2	6.7%	
합계	30	100%	

- 2차 결의일자: 2020년 12월 16일 제25기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분야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금융	6	20.0%	
경제	5	16.7%	
경영	4	13.3%	
회계	5	16.7%	
법률	4	13.3%	
소비자보호	3	10.0%	
정보기술	3	10.0%	
합계	30	100%	

추천경로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주주	2	6.7%	
합계	30	100%	

(7)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 보고일자: 2020년 6월 16일 제25기 제9차 정기이사회

분야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금융	7	23.3%	
경제	4	13.3%	
경영	4	13.3%	
회계	5	16.7%	
법률	4	13.3%	
소비자보호	3	10.0%	
정보기술	3	10.0%	
합계	30	100%	

추천경로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주주	2	6.7%	
합계	30	100%	

- 보고일자: 2020년 12월 16일 제245 제13차 정기이사회

분야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금융	6	20.0%	
경제	5	16.7%	
경영	4	13.3%	
회계	5	16.7%	
법률	4	13.3%	
소비자보호	3	10.0%	
정보기술	3	10.0%	
합계	30	100%	

추천경로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주주	2	6.7%	
합계	30	100%	

(8)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가) 사외이사 지원부서 운영 현황

- 부서명 : 전략기획팀
- 조직 : 대체자산운용/경영관리 부사장 소속 경영관리본부
- 인원구성 : 팀장 1명(총괄), 팀원 4명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관련 업무 보고 및 지원 내용

일 자	보고 및 지원내용
2020.03.24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자격검증 결과 보고 위원회의 후보 추천에 따른 후보자의 수락여부 확인 및 확인서류 징구 2020년도 제1차 사외이사 후보군 보고
2020.12.16	감사위원 후보 자격검증 결과 보고 위원회의 후보 추천에 따른 후보자의 수락여부 확인 및 확인서류 징구 2020년도 2차 사외이사 후보군 보고

4. 사외이사 활동 · 보수 등

가. 사외이사 활동 내역

(1)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가) 이사회

제25기 제1차 임시이사회 : 2020년 1월 6일 오후 4:40 ~ 5:5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창구	디디에 뚜슈	라케쉬 뱅게일	탁승훈	김지욱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					
4. 의결안건						
제1호 안건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의 건	-	-	-	-	-	유보
제2호 안건 경영진운영규정 개정의 건	-	-	-	-	-	유보
제3호 안건 경영진 평가 및 보수규정 개정의 건	-	-	-	-	-	유보
제4-1호 안건 이사 아닌 경영진 박태형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4-2호 안건 이사 아닌 경영진 김충선 선임의 건	-	-	-	-	-	유보
제5호 안건 조직개편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5기 제2차 임시이사회 : 2020년 1월 22일 오후 5:00 ~ 5:3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창구	디디에 뚜슈	라케쉬 뱅게일	탁승훈	김지욱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						
4. 의결안건						
제1호 계열사간 거래 승인의 건 - 신한에이아이 투자자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5기 제3차 임시이사회 : 2020년 2월 4일 오후 5:00 ~ 5:3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창구	디디에 뚜슈	라케쉬 뱅게일	탁승훈	김지욱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특이의견 없음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보고						
4. 의결안건						
제1호 2019년 제24기 (2019.1.1~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호 2019년도 제24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5기 제4차 임시이사회 : 2020년 3월 10일 오후 5:45 ~ 6:0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창구	디디에 뚜슈	라케쉬 뱅게일	탁승훈	김지욱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특이의견 없음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위원회 평가보고서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내부감사부서 평가 결과 보고 3.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보고						

제25기 제5차 정기이사회 : 2020년 3월 24일 오후 4:00 ~ 4:55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창구	디디에 뚜슈	라케쉬 뱅게일	탁승훈	김지욱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특이의견 없음						
1. 업계 동향 및 당사 실적 2. 감사업무 보고 3.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 4. 2019년도 내부통제체계·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보고 5. 2019년 재산상 이익의 제공 현황 및 적정성 점검 결과 보고 6. 감사위원회 의결 및 보고내용 보고 7. 2019년도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평가 보고 8. 2019년도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의 업무수행 실적 및 2020년 계획 보고 9.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대응현황 및 BCP 플랜 10.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보고						
4. 의결안건						
제1호 안건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호 안건 보수위원회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3호 안건 경영진평가 및 보수에 관한 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4호 안건 PS 운영규정 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5호 안건 계열사간 거래 승인의 건 - 신한아이타스 일반사무업무위탁계약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6호 안건 계열사간 거래 승인의 건 - 신한아이타스 MP서비스 계약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7호 안건 계열사간 거래 승인의 건 - 신한아이타스 보고서서비스 계약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8호 안건 최소영업자본액비율한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9호 안건 조세훈 후보자 겸직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10호 안건 제2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11호 안건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상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5기 제6차 임시이사회 : 2020년 3월 24일 오후 5:20 ~ 5:3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창구	디디에 뚜슈	라케쉬 뱅게일	조세훈	김지욱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4. 의결안건						
제1호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¹⁾	—주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호 선임사외이사 선임의 건 ²⁾	찬성	찬성	찬성	—주1)	찬성	가결
제3호 보수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³⁾	찬성	찬성	찬성	—주1)	찬성	가결
제4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⁴⁾	찬성	찬성	찬성	—주1)	찬성	가결
제5호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⁵⁾	찬성	—주1)	찬성	—주1)	찬성	가결
제6호 고유재산의 “신한BNPP TDF 및 TIF 시리즈”에 대한 Loss Cut 10% rule 적용 유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 1) 본인 심의 의결권 제한

- 1) 이창구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 2) 조세훈 이사 선임사외이사로 선임
- 3) 조세훈 이사 보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 4) 조세훈 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 5) 조세훈 이사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디디에 뚜슈 이사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임

제25기 제7차 임시이사회 : 2020년 4월 3일 오후 4:30 ~ 4:4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창구	디디에 뚜슈	라케쉬 뱅게일	조세훈	김지욱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4. 의결안건						
제1호 계열사간 거래 승인의 건 -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증권시장안정펀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5기 제8차 임시이사회 : 2020년 5월 19일 오후 4:00 ~ 4:3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창구	디디에 뚜슈	라케쉬 뱅게일	조세훈	김지욱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특이의견 없음						
1. Volcker Rule 준수 연간 확인서 보고						
4. 의결안건						
제1호 고유재산의 “신한BNPP 안심지속형 TDF(H) 시리즈”에 대한 임의시당 24억원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5기 제9차 정기이사회 : 2020년 6월 16일 오후 5:20 ~ 6:4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창구	디디에 뚜슈	라케쉬 뱅게일	조세훈	김지욱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특이의견 없음						
1. 업계 동향 및 당사 실적 2. 감사업무 보고 3.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보고 4. 감사위원회 의결 및 보고내용 보고 5. 보수위원회 심의 및 결의내용 보고 6. 위험관리위원회 심의 및 결의 내용 보고 7.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심의 및 결의 내용 보고 8. 고객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보고						
4. 의결안건						
제1호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호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3호 총 시당 한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4호 계열사간 거래 승인의 건 - 신한상표 등 사용계약에 따른 브랜드 사용료 산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5호 계열사간 거래 승인의 건 - 신한금융투자 사무실 임대차 계약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5기 제10차 임시이사회 : 2020년 7월 23일 오후 4:00 ~ 4:25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창구	디디에 뚜슈	라케쉬 뱅크일	조세훈	김지욱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특이의견 없음						

1. 감사위원회 의결 및 보고내용 보고 2. 위험관리위원회 심의 및 결의내용 보고						
4. 의결안건						
제1호 계열사간 거래 승인의 건 - 신한에이아이 투자자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5기 제11차 정기이사회 : 2020년 8월 21일 오후 4:05 ~ 4:2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창구	디디에 뚜슈	라케쉬 뱅게일	조세훈	김지욱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
3. 보고안건						
-						
4. 의결안건						
제1호 계열사간 거래 승인의 건 - 신한아이타스 가상통합펀드 기준가격산정업무 계약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제25기 제12차 정기이사회 : 2020년 9월 15일 오후 5:15 ~ 8:3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창구	디디에 뚜슈	라케쉬 뱅게일	조세훈	김지욱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특이 의견 없음						

1. 업계 동향 및 당사 실적 2. 감사업무 보고 3.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보고 4. 그룹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및 육성 후보군 보고 5. 고객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보고						
4. 의결안건						
제1호 계열사간 거래 승인의 건 - 신한아이타스 인터페이스 변경 계약 및 인력지원 계약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호 대체자산 사업부문 영업 양도 승인의 건	-	-	-	-	-	유보
제3호 배당 정책 변경의 건	-	-	-	-	-	유보
제4호 Investment Advisory Agreement 해지의 건	-	-	-	-	-	유보
제5호 정관 개정의 건	-	-	-	-	-	유보
제6호 제25기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7호 제25기 임시주주총회 의안 상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5기 제13차 임시이사회 : 2020년 12월 16일 오후 4:05 ~ 5:35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창구	디디에 뚜슈	라케쉬 뱅게일	조세훈	김지욱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특이 의견 없음						

1. 업계 동향 및 당사 실적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보고
3. 소송현황 보고
4. 자금세탁방지 활동 보고
5. 2020년 이행보증금 연간 납입 실적 보고
6. 감사위원회 심의 및 결의내용 보고
7. 위험관리위원회 심의 및 결의 내용 보고
8.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심의 및 결의내용 보고
9. 고객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보고

4. 의결안건

제1호 계열사간 거래 승인의 건 - 네오플렉스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호 2021년 계열사간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3호 고유재산의 “신한BNPP 평생소득 TIF 혼합투자신탁”에 대한 임의시당 8억원 연장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4호 2021년 이행보증금 연간 납입 총액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5호 2021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6호 2021년 예비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5기 제14차 임시이사회 : 2020년 12월 23일 오후 5:00 ~ 5:35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창구	디디에 뚜슈	라케쉬 뱅게일	조세훈	김지욱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4. 의결안건						
제1-1호 이사 아닌 경영진 박태형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1-2호 이사 아닌 경영진 류승헌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제25기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0년 3월 24일 오후 3:30 ~ 3:4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탁승훈	라케쉬 뱅게일	김지욱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특이의견 없음				
제1호.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4. 의결안건				
제1-1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후보 디디에 뚜슈 추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1-2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후보 조세훈 추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내역 결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5기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0년 3월 24일 오후 5:30 ~ 5:35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조세훈	라케쉬 뱅게일	김지욱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제1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¹⁾	-주1)	찬성	찬성	가결

주1) 의결권 제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8조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자신이 후보가 되는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결권의 수는 출석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경우 당해 위원의 의결권 수는 재적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조세훈 위원장 선임

제25기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0년 12월 16일 오후 4:00 ~ 4:05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조세훈	라케쉬 뱅게일	김지욱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제1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내역 결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감사위원회

제25기 제1차 정기 감사위원회 : 2020년 3월 10일 오후 5:00 ~ 5:4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	----------	----------

1. 감사위원 성명	탁승훈	디디에 뚜슈	라케쉬 뱅게일	김지욱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특이의견 없음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내부감사부서 평가결과 3.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보고 4. 감사업무 보고 5. 컴플라이언스 중요사항 보고 6. 외부감사인 고유계정 관련 보고(삼정회계법인)					
4. 의결안건					
가. 제1호 감사보고서(정기주주총회 보고안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위원회 평가보고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3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제4호 외부감사인 선정의 건 (삼일회계법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제5호 2020년 감사계획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제6호 2020 감사부서장 업무성과 평가(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5기 제2차 정기 감사위원회 : 2020년 6월 16일 오후 4:00 ~ 4:4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감사위원 성명	조세훈	디디에 뚜슈	라케쉬 뱅게일	김지욱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특이의견 없음					
1. 감사업무보고 2. 회계감사인의 집합투자재산 회계감사 결과통보 3. 컴플라이언스 중요사항 보고					
4. 의결안건					
가. 제1호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호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5기 제3차 정기 감사위원회 : 2020년 9월 15일 오후 4:00 ~ 4:4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감사위원 성명	조세훈	디디에 뚜슈	라케쉬 뱅크일	김지욱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특이의견 없음					
1. 감사업무 보고 2. 컴플라이언스 중요사항 보고 3. 외부감사인의 고유계정 감사 결과 보고 (삼일회계법인)					
4. 의결안건					
가. 제1호 전기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4기 제4차 정기 감사위원회 : 2020년 12월 14일 오후 4:00 ~ 4:5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감사위원 성명	조세훈	디디에 뚜슈	라케쉬 뱅크일	김지욱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특이의견 없음					
1.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계획 보고 2.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평가 결과 보고 3. 감사업무 보고 4. 컴플라이언스 중요사항 보고 5. 외부감사인의 고유계정 감사 계획 보고 (삼일회계법인)					
4. 의결안건					
가. 제1호 2020년 감사부서장 업무성과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위험관리위원회

제1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0년 3월 24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이창구	탁승훈	디디에 뚜슈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특이의견 없음				
1. 고유재산 위험분석 보고 2.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주요 보고사항 보고				
4.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				
최소영업자본액비율한도 심의	-	-	-	-

제2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0년 6월 16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이창구	조세훈	디디에 뚜슈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특이의견 없음				
1. 고유재산 위험분석 보고 2.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주요 보고사항 보고				
4. 의결안건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3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0년 9월 15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이창구	조세훈	디디에 뚜슈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특이의견 없음				
1. 고유재산 위험분석 보고 2.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결의 및 주요 보고사항 보고				

제4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0년 12월 14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이창구	조세훈	디디에 뚜슈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특이의견 없음				
1. 고유재산 위험분석 보고 2.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주요 의결사항 보고				

4. 의결안건				
고유재산운용 관련 거래상대방 및 운용대상 자산범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보수위원회

제1차 보수위원회 : 2020년 3월 24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조세훈	김지욱	라케쉬 뱅게일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제1호 안건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호 안건 2019년도 경영진 성과평가 및 단기성과급 지급(안) 확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3호 안건 2020년도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안) 확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제4호 안건 2020년도 경영진 등 보수 및 수당 결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제5호 안건 제휴파트너인 BNPP와 협의하여 선임한 경영진에 대한 2019년도 단기성과급 지급(안) 확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제6호 안건 제휴파트너인 BNPP와 협의하여 선임한 경영진에 대한 2020년도 보수 및 수당 결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제7호 안건 2019년도 보수체계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이. 제8호 안건 2019년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에 관한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가) 사외이사 디디에 뚜슈

사외이사 디디에 뚜슈는 2020년 3월 24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되었으며, 2020년 개최된 이사회 14회 중 14회, 감사위원회 4회 중 4회, 위험관리위원회 4회 중 4회 모두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사회 참석률 100%, 감사위원회 참석률 100%, 위험관리위원회 참석률 100%)

연중 개최된 이사회, 이사회 사전설명 등을 통해 당사 고유자산 현황 및 운용 리스크 관련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하였으며, 펀드 운용성과에 따른 리테일 영업방향 및 전략, 재무계획에 대해서도 다수의 발언 및 제언을 하며 논의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안건 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19년 약 40시간(이사회 등 안건 사전설명, 의안 및 의사록 검토시간, 이사회내위원회 포함)을 할애하였습니다.

(나) 사외이사 라케쉬 뱅게일

사외이사 라케쉬 뱅게일은 2019년 3월 29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으며, 2020년 개최된 이사회 14회 중 14회, 감사위원회 4회 중 4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회 중 3회, 보수위원회 1회 중 1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이사회 참석률 100%, 감사위원회 참석률 100%,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참석률 100%, 보수위원회 참석률 100%)

연중 개최된 이사회, 이사회 사전설명 등을 통해 당사 생산성 중심의 효율적

자원관리,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적 · 전략적 대응력 강화, 펀드 운용성과 개선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하였으며, 당사 수익기반 개선을 위한 전략, 재무계획에 대해서도 다수의 발언 및 제언을 하였습니다.

안건 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0년 약 40시간(이사회 등 안건 사전설명, 의안 및 의사록 검토시간, 이사회내위원회 포함)을 할애하였습니다.

(다) 사외이사 조세훈

사외이사 조세훈은 2020년 3월 24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으며, 선임 개최된 이사회 9회 중 9회, 감사위원회 3회 중 3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회 중 2회, 위험관리위원회 3회 중 3회, 보수위원회 1회 중 1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이사회 참석률 100%, 감사위원회 참석률 100%,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00%, 위험관리위원회 100%, 보수위원회 참석률 100%)

사전에 제공한 의안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 개진을 하였으며,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 경영판단과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안건 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0년 약 30시간(이사회 등 안건 사전설명, 의안 및 의사록 검토시간, 이사회내위원회 포함)을 할애하였습니다.

(라) 사외이사 탁승훈

사외이사 탁승훈은 2019년 3월 29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되었으며, 2020년 임기 중 개최된 이사회 5회 중 5회, 감사위원회 1회 중 1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회 중 1회, 위험관리위원회 1회 중 1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이사회 참석률 100%, 감사위원회 참석률 100%,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00%, 위험관리위원회 100%)

사전에 제공한 의안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 개진을 하였으며,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 경영판단과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안건 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0년 약 14시간(이사회 등 안건 사전설명, 의안 및 의사록 검토시간, 이사회내위원회 포함)을 할애하였습니다.

(라) 요약

구분 사외 이사명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활동 시간
			감사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위험관리 위원회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실적
디디에 뚜슈	14	14	4	4	-	-	-	-	4	4	40시간
라케쉬 벵게일	14	14	4	4	3	3	1	1	-	-	40시간
조세훈	9	9	3	3	2	2	1	1	3	3	30시간
탁승훈	5	5	1	1	1	1	-	-	1	1	14시간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신한금융지주회사와 당사를 포함한 모든 자회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임원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보상하는 손해

(가) 임원의 배상책임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임원의 부당행위(Wrongful Act)로 주주나 제 3 자(종업원, 소비자, 경쟁업체 등)가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해당 임원이 부담하는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보상. 부당행위(Wrongful Act)란 임원으로서의 의무위반, 태만, 과실, 누락, 허위진술,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진술을 행하였거나 또는 행하였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임원으로서 배상청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함 (담보 범위는 약관 및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임원에 대한 회사의 보상(Company Reimbursement)

상기 배상청구에 대하여 법률이나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의 배상책임을 회사가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회사의 손해를 보상

(2)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가) 임원의 의도적인 사기행위, 의무해태 또는 고의적인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나) 대주주 및 지배주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다)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함으로 취한 이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라) 부정직행위로서 고의적인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마) 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바) 불법으로 사적인 이익 또는 혜택을 획득한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아)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자) 전문직업 수행으로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3) 보험기간 : 2020.4 월~2021.3 월

(4) 보상한도 : 그룹 총 보상한도 500 억원 (청구당/자회사별)

(5) 담보지역 : 북미지역 포함 전세계

다만, 당사 및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제주은행의 이사회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규율하는 사외이사의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사외이사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사외이사의 자기부담액을 배상책임액의 20% 이상으로 하는 것을 규정화하였습니다.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22 조 제 5 항제 6 항에 동 내용을 적시)

상기 내용을 임원책임배상보험에 아래와 같은 특약을 삽입하여 임원책임배상보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른 특약 신설 : 피보험회사 중 신한금융지주회사,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 BNP 파riba자산운용, 제주은행의 사외이사일 경우 자기부담액을 최대 1 억원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액의 20%로 한다.]

다. 사외이사 교육 · 연수

사외이사 성명 (최초 선임일)	디디에 뚜슈 (‘16. 02. 03)	라케쉬 뱅게일 (‘19. 03. 29)	조세훈 (‘20. 03. 24)
1. 교육·연수 실시 내역			
가.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실시일자: 2020년 12월 15일 - 주요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1시간)	참석(1시간)	참석(1시간)
2. 누적 교육 시간	1	1	1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 사외이사 디디에 뚜슈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임원의 자격 요건 (지배구조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항 없음
나.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지배구조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금융 및 회계 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

(2) 사외이사 라케쉬 뱅게일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임원의 자격 요건 (지배구조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항 없음
나.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지배구조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금융 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
--------	----	-------------------------------------

(3) 사외이사 조세훈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임원의 자격 요건 (지배구조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항 없음
나.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지배구조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금융 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

(4) 사외이사 탁승훈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임원의 자격 요건 (지배구조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항 없음
나.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지배구조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금융 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

마. 기부금등 지원내역

사외이사	기부받은 비영리법인 등		기부한 금융회사등	지원내역	
	법인등의 명칭			선임 전	선임 후
	사외이사와 관계				
해당사항 없음					

바. 사외이사 평가

(1) 평가 개요

당사는 사외이사의 임기를 신규 선임 시 2년, 연임 시 임기는 1년이내로 최대 6년간의 연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의 역량 · 자질 및 실적 등에 대해 이사회에서 결의한 방법에 의거하여 내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평가

(가) 내부평가 개요

- ① **평가 주체:** 사외이사의 연간 활동에 대한 평가는 익년도 1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② **평가 기준:** 평가는 자기평가(본인평가), 이사회 평가(본인을 제외한 사외이사 전원에 의한 평가) 및 직원평가로 구성되며, 평가지표는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외이사 개개인에 대한 종합의견을 기술하도록 하여 정성적인 평가요소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 ③ **평가 절차:** 사외이사 평가는 우편을 통한 설문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④ **평가의 객관성 제고 장치:** 당사 이사회는 평가주체, 기준, 방법 등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의 전 과정을 외부업체에 위탁을 통하여 사외이사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1) 총론

‘2020년도 사외이사 평가’는 자기평가(본인 평가), 이사회 평가(본인을 제외한 사외이사 전원에 대한 평가), 직원평가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말 재임하고 있는 3명의 사외이사 전원이 사외이사 직무에 대한 기대 이상의 강점을 보이는 4등급 이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가대상 사외이사 3명의 경우 회사 및 그룹차원의 비전, 전략 및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사회 안건 논의 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심도 높은 논의가 가능한 인력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금융 전반에 대한 이해도, 경험, 경륜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며 전문성 및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효율적인 진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관, 지배구조 내부규범 등에 적시된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고려할 때 당사의 사외이사 전원은 사외이사직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사외이사	평가결과				개선방안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충실성	
디디에 뚜슈	4	4	5	4	-
라케쉬 뱅게일	4	4	4	5	-
조세훈	4	4	4	4	-

※ 평가등급 : 5등급: 매우 우수 / 4등급 : 우수 / 3등급 : 보통 / 2등급 : 부진 / 1등급 : 매우 부진

(3) 외부평가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해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 선임사외이사 활동 내역

당사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며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 회의소집 및 주재,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이나 회사로부터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당사는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가 역임하므로,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5조에 의거하여 2020년 3월 24일 제25기 제6차 임시이사회에서 조세훈 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2) 사외이사 지원 부서의 활동내역

(가) 지원부서 현황

전략기획팀 (팀장 1명, 팀원 4명)

(나) 지원부서 수행 업무

당사 전략기획팀은 이사회와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이사(사외이사 포함)에 대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등의 회의 소집 및 집행 등을 위한 실무지원
- 이사회 등의 회의내용 기록 유지
- 이사회 등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지원
- 사외이사에 대한 당사 관련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지원
-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 이사 연수프로그램의 개발/소개 및 실무지원
- 이사회 및 이사의 각종 법규준수를 위한 지원
- 사외이사 및 이사회(이사회내위원회 포함)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 기타 이사회 등의 지시사항 처리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1) 사외이사 디디에 뚜슈

(가) 재직기간: 2016년 2월 3일~재직중 (59개월)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제공 현황:

디디에 뚜슈 사외이사는 주주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당사는 사외이사 활동에 대해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4조 제5항에서도 신한금융지주회사 및 제휴 파트너인 BNPP 임직원인 사외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 라케쉬 뱅게일

(가) 재직기간: 2019년 3월 29일~재직중 (23개월)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제공 현황:

라케쉬 뱅게일 사외이사는 주주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당사는 사외이사 활동에 대해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4조 제5항에서도 신한금융지주회사 및 제휴 파트너인 BNPP 임직원인 사외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 조세훈

(가) 재직기간: 2020년 3월 24일~재직중 (약 9개월)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29,145,161	
	기본금	23,145,161	월 250만원
	상여금	-	
	기타수당	6,000,000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업무활동비		해당사항 없음
	건강검진 지원		해당사항 없음
	차량 제공		해당사항 없음
	사무실 제공		해당사항 없음
	기타 편익 제공		해당사항 없음

(4) 사외이사 탁승훈

(가) 재직기간: 2017년 12월 14일~2020년 3월 24일 (약 27개월)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15,435,484	
	기본금	7,500,000	월 250만원
	상여금	-	
	기타수당	7,935,484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업무활동비		해당사항 없음
	건강검진 지원		해당사항 없음
	차량 제공		해당사항 없음
	사무실 제공		해당사항 없음
	기타 편익 제공		해당사항 없음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사외이사 성명	사외이사와의 관계	소속기관명 (소속기관 담당 직위)	계약체결 내용
해당사항 없음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경력
빈센트 카멜링크	'13. 06.21	'16. 02.03	31 개월	감사위('13.6월~'16.2월) 사추위('14.3월~'16.2월) 보수위('15.3월~'16.2월)	-	-
김형진	'13. 06.21	'14. 03.20	9 개월	감사위('13.6월~'14.3월)	선임사외이사('13.6월~'14.3월) 감사위원장('13.6월~'14.3월)	前)신한금융지주 부사장
리지아 토레스	'13. 10.11	'19. 03.29	60 개월	감사위('15.9월~'19.3월) 임추위('16.8월~'19.3월) 보수위('17.3월~'19.3월)	-	BNPP AM Asia APAC CEO
전영교	'14. 03.20	'16. 02.03	23 개월	감사위('14.3월~'16.2월) 사추위('15.6월~'16.2월) 보수위('15.3월~'16.2월)	선임사외이사('15.3월~'16.2월) 감사위원장('15.6월~'16.2월) 보수위원장('15.3월~'16.2월)	前)신한금융지주 재무팀 본부장
김임근	'15. 03.30	'16. 10.25	19 개월	감사위('15.3월~'16.10월) 사추위('16.3월~7월) 임추위('16.8월~10월) 보수위('16.2월~10월) 리스크위('16.8월~10월)	선임사외이사('16.3월~10월) 감사위원장('16.3월~10월) 보수위원장('16.3월~10월) 위험관리위원장('16.8월~10월)	現)신한금융지주 리스크관리팀 본부장
디디에 뚜슈	'16. 02.03	재임중	59 개월	감사위('16.2월~재임중) 사추위('16.2월~7월) 보수위('16.2월~'17.3월) 위험관리위('16.8월~재임중)	-	BNPP AM APAC&Emerging 리스크 본부장
류승헌	'16. 02.03	'17. 12.31	23 개월	감사위('16.2월~'17.12월) 임추위('16.8월~'17.12월) 보수위('16.12월~'17.12월) 위험위('16.12월~'17.12월)	선임사외이사('16.12월~'17.12.14) 감사위원장('16.12월~'17.12월) 임추위원장('16.12월~'17.12월) 보수위원장('16.12월~'17.12월) 위험관리위원장('16.12월~'17.12월)	신한금융지주 IR팀 본부장
탁승훈	'17. 12.14	'20. 03.24	27 개월	감사위('17.12월~'20.3월) 임추위('17.12월~'20.3월) 보수위('17.12월~'20.3월) 위험위('17.12월~'20.3월)	선임사외이사('17.12월~'20.03.24) 감사위원장('18.3월~'20.03.24) 임추위원장('18.3월~'20.03.24) 보수위원장('18.3월~'20.03.24) 위험관리위원장('18.3월~'20.03.24)	前)신한은행 압구정중앙지점 지점장

라케쉬 벵게일	'19. 03.29	재임중	23 개월	감사위('19.3월~재임중) 임추위('19.3월~재임중) 보수위('19.3월~재임중)	-	BNPP AM Asia APAC D-CEO
조세훈	'20. 03.24	재임중	9 개월	감사위('20.3월~재임중) 임추위('20.3월~재임중) 보수위('20.3월~재임중) 위험위('20.3월~재임중)	선임사외이사('20.3월~재임중) 감사위원장('20.3월~재임중) 임추위원장('20.3월~재임중) 보수위원장('20.3월~재임중) 위험관리위원장('20.3월~재임중)	이룸투자자문 대표

※ 보수위원회 신설: 2015년 3월 30일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폐지: 2016년 8월 1일

※ 위험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신설: 2016년 8월 1일

5. 대표이사 경영승계

가. 대표이사 경영승계 내부규정

당사는 신한금융그룹의 자회사로서, 신한금융그룹은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계획 운영 등 그룹내 자회사 지배구조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4 년 5 월 10 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2014 년 12 월 24 일 시행된 모범규준 상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대표이사 경영승계 과정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5 년 2 월 26 일 이사회에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2020 년 5 월 21 일에는 자회사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자회사 CEO 의 책임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가 담당해 온 자회사의 대표이사 아닌 경영진 후보 인선 기준 및 심의 관련 기능을 자회사 이사회가 담당하도록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의 주요 내용은 자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 종료 사유와 시기,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관리방법, 비상승계계획 등입니다.

<붙임>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규정

2004. 5. 10 제정
2005. 6.29 개정(1)
2009.11.12 개정(2)
2010. 2.26 개정(3)
2011.2.8 개정(4)
2011.2.21 개정(5)

2015.2.26 개정(6)
2015.8.24 개정(7)
2016.8.1 개정(8)
2018.2.20 개정(9)
2018.12.12 개정(10)
2019.12.13 개정(11)
2020.5.21 개정(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회사의 이사인 경영진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2010.2.26 시행)

② 회사의 이사인 경영진을 제외한 위원은 자회사 경영관리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당해 자회사 경영지원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의 이사 아닌 경영진 및 제5조 제1항 제5호의 경우의 감사팀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결의 및 심의사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자회사의 대표이사 후보군 탐색 시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②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5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결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자회사 대표이사의 자질 등 자격요건의 설정
2.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3.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선정 및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증 등 후보군 관리
4. 자회사 경영진 리더십 평가에 관한 사항

5. 자회사 감사결과에 따른 제재 등 조치요구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대표이사 회장은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 제1호·제4호, 제2항 제1호의 사항에 대해 달리 결의할 수 있다.

제6조(자회사 경영승계계획)

- ① 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이 제안한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자회사의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연1회 이상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선정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 회장은 위원회에서 수립된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에 따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의 평가 및 개발활동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④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선정 기준
 2.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3.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4.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 프로세스

제7조(후보추천 및 검증)

- ① 위원회는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임기만료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을 완료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대표이사 유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경영승계 계획 상의 가속승계 절차를 따른다.
- ④ 회사는 해당 자회사로 하여금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자회사 대표이사 대행자 및 운영계획, 자회사 대표이사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자회사의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로 하여금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1.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절차 개요
 2. 자회사 경영관리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6.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8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관계인 출석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 및 자회사의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1조(적용범위) 제6조 및 제7조는 자회사 중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 5.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1)

1.(시행일) 이 규정은 2005. 6.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2)

1.(시행일) 이 규정은 2009 회계연도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3)

1.(시행일) 이 규정은 2009 회계연도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4)

1.(시행일) 이 규정은 2011. 2. 8부터 시행한다.

부 칙(5)

1.(시행일) 이 규정은 2011. 2.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6)

1.(시행일) 이 규정은 2015.2.26부터 시행한다.

부 칙(7)

1.(시행일) 이 규정은 2015.8.24부터 시행한다.

부 칙(8)

1.(시행일) 이 규정은 2016.8.1부터 시행한다.

부 칙(9)

1.(시행일) 이 규정은 2018.2.20부터 시행한다. 단, 규정 제5조 제5항은 제주은행의 경우 2018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관련 규정을 변경한 때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10)

1.(시행일) 이 규정은 2018.12.12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1.(시행일) 이 규정은 2019.12.13부터 시행한다.

1.(시행일) 이 규정은 2020.5.21부터 시행한다.

나.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안정적 경영승계를 위해 2011년 자회사 CEO 승계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을 상시 관리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의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자격요건, 법률요건 등을 고려하여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승계시점 자회사 CEO로서 요구되는 전략적 역할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을 심의합니다.

금융회사인 자회사의 대표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하는 임원의 자격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법 및 시행령은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동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 인가 ·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동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일 경우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후보군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자회사 대표이사 임기만료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을 완료합니다. 금융회사인 자회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천된 대표이사 후보에 대하여 관계법규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자회사의 주주총회에 추천하며, 추천된 대표이사 후보는 해당 자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됩니다.

또한, 당사는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회사 대표이사 육성 후보군을 선정하여 미래의 자회사 CEO 후보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에 대한 통찰력, 전사관점 의사결정, 전략실행/추진력, 리더십, 대내외 영향력 등 다양한 요소의 개발 프로그램을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육성 후보군의 경영성과 및 개발활동의 결과를 정기적으로 심의, 평가하고, 자회사 대표이사를 추천함에 있어 후보군 평가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회사 대표이사가 불의의 사고, 갑작스러운 건강 상 이유 등으로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경영승계 계획상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가속승계 프로세스를 통해 자회사 대표이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규정에 따라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대표이사 대행자 및 회사 운영계획, 자회사 대표이사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대표이사 자격요건

대표이사는 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소극적 요건을 기술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 규정에서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동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동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일 경우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 및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9조에 의하면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대표이사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 방법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후보군 선정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1회 이상 지주회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③ 경영승계절차 개시 사유 및 시기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임기만료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을 완료하되, 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그룹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2을 초과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④ 최종후보자 추천절차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자격요건, 법률요건 등을 고려하여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승계시점 자회사 CEO로서 요구되는 전략적 역할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을 심의합니다.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관계법규와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합니다.

⑤ 경영승계절차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에 따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를 위원회 결의로 추천하고,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및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함으로써 경영승계 절차가 종료됩니다.

⑥ 후보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회사 대표이사 육성

후보군을 선정하여 미래의 자회사 CEO 후보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에 대한 통찰력, 전사관점 의사결정, 전략실행/추진력, 리더십, 대내외 영향력 등 다양한 요소의 개발 프로그램을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육성 후보군의 경영성과 및 개발활동의 결과를 정기적으로 심의, 평가하고, 자회사 대표이사를 추천함에 있어 후보군 평가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비상계획

당사 대표이사가 불의의 사고, 갑작스러운 건강상 이유 등으로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경영승계 계획상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가속승계 프로세스를 통해 자회사 대표이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규정에 따라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대표이사 대행자 및 회사 운영계획, 자회사 대표이사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는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및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경영승계 절차가 종료됩니다.

다. 대표이사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요건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5조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한 최고경영자 자격요건은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

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입니다.

라. 대표이사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1) 대표이사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최고경영자 선정을 위하여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최고경영자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관계법규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합니다.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로 추천하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하여 후보를 추천합니다.

2020년에는 대표이사 후보 추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 대표이사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결과

2020년에는 대표이사 후보 추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마.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 6 조에 따라 후보자 선정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 1 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안정적 경영승계를 통한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확립하고자 자회사 대표이사

육성 후보군을 선정하여 미래의 자회사 CEO 후보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2020 년 5 월 21 일 개최된 제 4 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는 당해년도 12 월말 기준 승계계획 적용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부사(행)장보 이상 경영진 전원으로 육성후보군 범위를 확대하여 총 43 명의 육성 후보를 선정하였으며 연중 상시적으로 후보군 육성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 2 조에 따라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는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후보군 관리와 관련된 실무지원은 지주회사 신한리더십센터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육성후보군별 경영성과, 개발활동에 대한 심의 및 평가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현황>

구분	후보군 수	추천 경로
내부	43명	2020년 5월 21일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육성후보군 선정

바. 이사회 의 대표이사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에 따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연1회 이상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신한금융지주회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 대표이사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 현황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한리더십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한리더십센터는 팀장과 팀원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승계 계획 운영 등 경영리더 육성 및 관리, 경영진 성과 보상

및 평가, 그룹 인사정책 방향 수립 및 실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한리더십센터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8조에 따라 상시적인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그 밖에 대표이사 경영승계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에 따라 신한리더십센터는 동 위원회가 경영승계 계획 적정성과 대표이사 후보자 선발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1회 이사회에 보고하는 실무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현황>

- 부서명 : 신한리더십센터
- 직원수 : 총 10명
- 운영내역

일자	운영내역	비고
2020.3.5	2019년 자회사 CEO 리더십 평가 관련 실무 지원 2020년 자회사 경영진 리더십 평가체계 수립 관련 실무 지원	제1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20.3.20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제2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20.3.26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 관련 실무 지원	제3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20.5.21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개정 및 자회사 경영진 선임절차 개선안 심의 관련 실무 지원 2019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평가 심의 관련 실무 지원 2020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 심의 관련 실무 지원 2020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개발계획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제4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20.8.13	2020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개발계획 변경 보고 관련 실무 지원	제5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20.9.24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제6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20.11.12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관련 실무 지원 자회사 경영진 리더십 평가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제7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20.12.10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후보군 선정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자회사 대표이사 압축후보군 선정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제8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20.12.17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제9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6.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설정,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대표이사 이외의 경영진 인선기준 및 후보 심의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이사인 경영진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이사(총 위원의 1/2 이상은 사외이사)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구성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2019년 3월 27일에 대표이사 회장과 4명의 사외이사를 위원으로 선임하여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동일 개최된 제3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020.3 정기주주총회 이전>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조용병	사내	위원장	2019.3.27	2020.3.26
박안순	사외	위원	2019.3.27	2020.3.26
박철	사외	위원	2019.3.27	2020.3.26
이운재	사외	위원	2019.3.27	2020.3.26
허용학	사외	위원	2019.3.27	2020.3.26

<2020.3 정기주주총회 이후>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등	선임일	임기만료일
조용병	사내	위원장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변양호	사외	위원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이윤재	사외	위원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허용학	사외	위원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박안순	사외	위원	2020.3.26	2021.3월 정기주주총회일

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020년도에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총 9회 개최되었으며, 기간 중 부의된 결의안건 15개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020년 3월 개최된 제2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는 신한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 후보를 추천하였으며, 5월에 개최된 제4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자회사경영승계계획의 개정을 통해 육성후보군 선정 기준을 변경 후 43명의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을 선정하고, 육성후보군 개발계획에 대하여 심의, 결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회사의 CEO를 제외한 경영진의 선임 절차와 관련한 규정 개정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2020년 9월 개최된 제6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는 당그룹에 새로이 편입된 신한벤처투자(舊네오플렉스) 대표이사 사장 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제7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는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였고, 2020년 12월에는 제8회, 제9회 두차례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통해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舊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아시아신탁,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대체투자운용, 신한리츠운용, 신한SI의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2020년도 제1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20년 3월 5일(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조용병	박안순	박 철	이윤재	허용학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의견 없음					
가.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운영 개선 방향성 보고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2019년 자회사 CEO 리더십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 안건 (2020년 자회사 경영진 리더십 평가체계 수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0년도 제1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중 5명이 출석하여 성원되었으며, 제1호 안건으로 2019년 자회사 CEO리더십 평가의 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제2호 안건으로는 2020년 자회사 경영진 리더십 평가체계 수립의 건을 부의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운영 개선 방향성을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20년 3월 20일(금)>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조용병	박안순	박 철	이윤재	허용학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	----	----	----	----	----

2020년도 제2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중 5명이 출석하여 성원되었으며, 제1호 안건으로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을 부의하여 신한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 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20년 3월 26일(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조용병	박안순	변양호	이윤재	허용학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0년도 제3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중 5명이 출석하여 성원되었으며, 1호 안건으로 자회사경영관리위원장 선임의 건이 부의되어, 조용병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20년 5월 21일(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조용병	박안순	변양호	이윤재	허용학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개정 및 자회사 경영진 선임절차 개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 안건 (2019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평가 심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 안건 (2020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4호 안건 (2020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개발계획 심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0년도 제4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중 5명이 출석하여 성원되었으며, 제1호 안건으로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개정 및 자회사 경영진 선임절차 개선의 건을 부의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차세대 후보군 확대를 위해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을 개정하였고, 자회사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및 자회사 CEO의 책임경영 지원 차원에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후보 추천 대상에서 자회사의 CEO 아닌 경영진을 제외하고,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의 자회사 이사회 보고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규정개정안은 동일자 개최된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습니다. 제2호 안건으로는 2019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평가 심의의건을 부의하여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에 대한 평가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제3호 안건으로 2020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의 건이 부의되었으며,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적용 대상 자회사의 부사장보, 부행장보 이상 경영진 전원 43명이 2020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제4호 안건으로는 2020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개발계획 심의의건을 부의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20년 8월 13일(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조용병	박안순	변양호	이윤재	허용학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의견 없음					
가. 1호 안건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개발계획 변경 보고)						

2020년도 제5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중 5명이 출석하여 성원되었으며, 자회사 임원 업무분장 변경 또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담당 업무가 변경된 육성후보군의 개발계획 변경 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6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20년 9월 24일(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	----------	--	--	--	--	----------

1. 이사 성명	조용병	박안순	변양호	이윤재	허용학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0년도 제6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중 5명이 출석하여 성원되었습니다. 제1호 안건으로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의 건을 부의하여, 신한벤처투자(舊네오플렉스) 대표이사 사장 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7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20년 11월 12일(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조용병	박안순	변양호	이윤재	허용학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0년도 제7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중 5명이 출석하여 성원되었습니다. 제1호 안건으로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및 이를 반영한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등 내외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절차가 연간 적절히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이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회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이 안정적인 경영 승계를 통한 경영의 연속성 확보 및 자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2호 안건으로는 자회사 경영진 리더십 평가의 건을 부의하여, 자회사의 CEO 아닌 경영진의 리더십 평가 결과를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8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20년 12월 10일(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	----------	--	--	--	--	----------

1. 이사 성명	조용병	박안순	변양호	이운재	허용학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후보군 선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 안건 (자회사 대표이사 압축후보군 선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0년도 제8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중 5명이 출석하여 성원되었습니다. 제1호 안건으로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후보군 선정의 건을 부의하여, 2020년 연말 임기가 만료되는 14개 자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CEO 후보군을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제2호 안건으로는 자회사 대표이사 압축후보군 선정의 건을 부의하였고, 제1호 안건 심의 대상이 된 14개 자회사 별로 3~5명의 압축후보군을 심의 선정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9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20년 12월 17일(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조용병	박안순	변양호	이운재	허용학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0년도 제9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중 5명이 출석하여 성원되었습니다. 제1호 안건으로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의 건을 부의하여, 2020년도 제8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선정된 회사별 압축후보군을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에 따른 '그룹 공통 자격요건'과 회사별 '전략적 요구역량'을 기준으로 심의하였고, 회사별 대표이사 최종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추천 대상 회사는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舊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아시아신탁,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대체투자운용, 신한리츠운용, 신한SI 등 14개사입니다. 위원회는 2020년 5월 개최된 제4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결의를 통해 자회사 CEO 아닌 경영진을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후보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관련 정관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제주은행의 부행장 후보도 함께 추천하였습니다.

7.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업무처리에 대해 적법성 감독뿐 아니라 적정성 감독을 수행합니다.

동 업무 수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실사,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관련징계 요구,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등의 방법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경영전문가, 회계전문가, 리스크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필요 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① 이사회 등 안건에 대한 감독

당사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정관 §38②). 이에 따라 2020 년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에 부의될 감사보고서 등에 대하여 이사회로부터 제출받아 2020 년 3 월 10 일 감사위원회에서 부의를 거친 후 감사의견을 이사회에 제시하였습니다.

②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당사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업무집행에 대해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상법 §412, 지배구조법 §20④) 관련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처리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402).

이에 따라 2020 년도 중 고유재산 시재 및 재무감사, 준법, 업무, 경영, IT 감사 등 일상감사 및 수시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에 따라 각 해당 담당자에게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개선내용에 대해 사후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외감법 §4). 당사는 2020년 3월 10일 감사위원회에서 정기주주총회의 보고안건인 감사보고서와 FY2019년 고유계정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하여 의결 및 보고를 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12일 제4차 정기 감사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 및 절차를 승인하고, 이후 선정기준에 따라 2020년 3월 10일 제1차 정기 감사위원회에서 대면회의를 통하여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의 시행으로 2019년 11월 15일 신한금융지주회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20년부터 2022년 사업년도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지정 받아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인 상황에서 모든 그룹사의 외부감사인의 일치 운영이 필요하여 삼일회계법인을 당사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도록 신한금융지주회사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2019년 12월12일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재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의 해임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동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를 승인하였고 2020년 3월 10일 제1차 정기 감사위원회에서 대면회의를 통하여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 상임감사위원 관련 사항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부서의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사부서의 부서장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감사위원회규정 §16). 또한, 감사인은 매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감사위원회 직무규정 §15).

- 연간감사계획에 의한 세부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확인
- 감사실시 등 내부감사 업무 통할
- 기타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라) 재무제표 검토 등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사로부터 받은 재무제표 · 연결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를 감사부서에 위임하여 회계감사기준 등에 따라 검토하고, 감사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검토 결과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등이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라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매 사업연도마다 보고합니다(외감법 §8).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위원회는 해당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마) 기타

감사위원회는 감사인(감사부서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보고 받으며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보고 받습니다(감사위원회 직무규정 §15, 감사위원회규정 §17).

이에 따라 감사인(감사부서장)은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보고를 포함한 세부감사실시

내역 및 감사결과,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감사결과 조치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준법감시인은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한 주기적인 점검 및 상시 감사업무,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업무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감사위원회 위원)

(1) 총괄

당사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말 기준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총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최초선임일/횟수)	임기 만료일
디디에 뚜슈	사외이사/비상임	-	2019.03.29 (2016.02.03/2회)	2021년 개최 정기주총
조세훈	사외이사/비상임	위원장	2020.03.24 (2020.3.24/1회)	2022년 개최 정기주총
라케쉬 뱅게일	사외이사/비상임	-	2019.03.29 (2019.03.29/1회)	2021년 개최 정기주총
김지옥	기타비상무이사/비상임	-	2019.12.12 (2019.12.12/1회)	2021년 개최 정기주총

다. 활동 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0년에는 모든 감사위원의 활발한 참여 하에 총 4회(정기 4회)의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어, 부의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수행하였으며, 경영진의 업무처리에 대한 적법성 및 적정성에 대해 보고 받고 점검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개최 전 의안을 감사위원들에게 공유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을 통해 감사위원들의 이해를 돕고 있어, 다양한 전문적 배경을 지닌 위원들이 감사위원회에서 활발한 토의가 가능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해 10건의 부의 안건을 가결하고, 17건의 보고 안건을 검토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제25기 제1차 정기 감사위원회: 2020년 3월 10일 오후5:00~5:4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감사위원 성명	탁승훈	디디에 두슈	라케쉬 뱅게일	김지욱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특이의견 없음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내부감사부서 평가결과 3.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보고 4. 감사업무 보고 5. 컴플라이언스 중요사항 보고 6. 외부감사인 고유계정 관련 보고(삼정회계법인)					

4. 의결안건					
가. 제1호 감사보고서(정기주주총회 보고안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위원회 평가보고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3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제4호 외부감사인 선정의 건 (삼일회계법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제5호 2020년 감사계획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제6호 2020 감사부서장 업무성과 평가(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5기 제2차 정기 감사위원회: 2020년 6월 16일 오후 4:00~4:4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감사위원 성명	조세훈	디디에 뚜슈	라케쉬 뱅게일	김지욱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특이의견 없음					
1. 감사업무보고 2. 회계감사인의 집합투자재산 회계감사 결과통보 3. 컴플라이언스 중요사항 보고					
4. 의결안건					
가. 제1호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호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5기 제3차 정기 감사위원회: 2020년 9월 15일 오후 4:00~4:4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감사위원 성명	조세훈	디디에 뚜슈	라케쉬 뱅게일	김지욱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특이의견 없음					
1. 감사업무 보고 2. 컴플라이언스 중요사항 보고 3. 외부감사인의 고유계정 감사 결과 보고 (삼일회계법인)					
4. 의결안건					
가. 제1호 전기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5기 제4차 정기 감사위원회: 2020년 12월 14일 오후 4:00~4:5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감사위원 성명	조세훈	디디에 뚜슈	라케쉬 뱅게일	김지욱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특이의견 없음					
1.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계획 보고 2.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평가 결과 보고 3. 감사업무 보고 4. 컴플라이언스 중요사항 보고 5. 외부감사인의 고유계정 감사 계획 보고 (삼일회계법인)					
4. 의결안건					
가. 제1호 2020년 감사부서장 업무성과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평가

감사위원회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9조(이사회내위원회) 제4항에 의거 연1회 이사회내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이사회내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당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평가제도 도입 승인을 2016년 12월 제21기 제10차 정기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0년도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2021년 1월에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되며, 감사위원회는 동 평가에서 4등급(우수)를 받았습니다.

구체적 평가항목에는 위원회 개최 빈도의 적정성, 위원회 회의시간의 적정성, 위원회 안건의 범위·깊이 적정성, 당사로부터의 적기에 충분한 정보수령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추후 당사는 매년초 전년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라. 감사보조조직 등

감사보조조직으로 감사위원회 산하 감사실이 있으며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감사부서장(실장)외 1인의 감사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자	대상	보고 및 지원내용
----	----	-----------

2020 03.10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위원회 평가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내부감사부서 평가결과 보고,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 외부감사인 선정, 2020년 감사계획 작성, 2020년 감사부서장 업무성과평가안 수립,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보고, 감사업무보고 등
2020 06.16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감사업무보고, 회계감사인의 집합투자재산 회계감사 결과 통보, 컴플라이언스 중요사항 보고
2020 09.15	감사위원회	전기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감사업무보고, 컴플라이언스 중요사항 보고, 외부감사인의 고유계정 감사 결과 보고
2020 12.14	감사위원회	2020년 감사부서장 업무성과 평가,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계획 보고,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평가 결과 보고, 감사업무보고, 컴플라이언스 중요사항 보고, 외부감사인의 고유계정 감사 계획 보고

8. 위험관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는 2016년 8월 1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16년 7월 28일 개최된 제21기 제7차 임시이사회 결의를 통해 8월 1일 위험관리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당사 위험관리위원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회사의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기타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리스크의 효율적인 관리 감독과 그에 따른 제반 정책의 심의 · 의결을 수행하며,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당사 리스크관리의 기본 방침(철학)은 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며 회사경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에 있어 리스크와 수익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당사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규정에 명시된 리스크관리 철학을 바탕으로 회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인식 · 측정 · 감시 · 통제하는 등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당사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의 리스크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최소영업자본액비율 및 리스크 유형별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그 관리 현황과 리스크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주요 의결사항을 매분기 보고받고 있습니다.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당사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의 적정 투자한도 및 손실 허용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회사의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기타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인식 · 측정 · 감시 · 통제하는 데 필요한 제반 원칙과 내용을 규정한 「고유재산 리스크관리규정」과 「집합투자재산 리스크관리업무규정」의 제정 및 변경 사항을 심의 · 의결하고 있습니다.

(마) 기타

당사 위험관리위원회는 그 외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 결의하고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당사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위원회규정에 따라 2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말 기준으로 당사 위험관리위원회는 총 3명중 2명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회사 경영전반에 걸친 리스크관련 사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2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전문성에 기반한 견제

및 심의, 결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이창구	상임	대표이사	2019.03.29	2020.12.31
디디에 뚜슈	사외이사	-	2020.03.24	2021 개최 정기주총
조세훈	사외이사	위원장	2020.03.24	2022 개최 정기주총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당사 위험관리위원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총 4회의 위험관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제1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0년 3월 24일 [안건 통지일 : 2020년 3월 5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이창구	탁승훈	디디에 뚜슈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특이의견 없음				
1. 고유재산 위험분석 보고 2.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주요 보고사항 보고				

4.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				
최소영업자본액비율한도 심의	-	-	-	-

제2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0년 6월 16일 [안건 통지일 : 2020년 6월 8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이창구	탁승훈	디디에 뚜슈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특이의견 없음				
1. 고유재산 위험분석 보고 2.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주요 보고사항 보고				
4.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	-	-

제3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0년 9월 15일 [안건 통지일 : 2020년 9월 7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이창구	조세훈	디디에 뚜슈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특이의견 없음				
1. 고유재산 위험분석 보고 2.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주요 보고사항 보고				

제4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0년 12월 14일 [안건 통지일 : 2020년 12월 7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이창구	조세훈	디디에 뚜슈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특이의견 없음				
1. 고유재산 위험분석 보고 2.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주요 의결사항 보고				
4. 의결안건				
고유재산운용 관련 거래상대방 및 운용대산 자산범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평가

위험관리위원회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9조(이사회내위원회) 제4항에 의거 연1회 이사회내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이사회내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당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평가제도 도입 승인을 2016년 12월 제21기 제10차 정기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0년도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2021년 1월에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되며, 위험관리위원회는 동 평가에서 4등급(우수)를 받았습니다.

구체적 평가항목에는 위원회 개최 빈도의 적정성, 위원회 회의시간의 적정성, 위원회 안건의 범위·깊이 적정성, 당사로부터의 적기에 충분한 정보수령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추후 당사는 매년초 전년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9.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당사는 2018년 10월 31일부터 11월 27일 및 2019년 2월18일부터 2월19일까지 진행된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및 부문검사 결과 2019년 12월23일 아래와 같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구 분	업무별	제 목	비 고
지적사항/ 문책 및 자율 처리 필요 사항	신탁재산 투자·운용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신탁재산 투자·운용	계열회사 발행 고위험채권 편입금지 위반	
지적사항/ 자율처리 필요사항	신탁재산 투자·운용	판매회사와의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에 대한 관리 소홀	
	신탁재산 투자·운용	집합투자증권 운용보고서 기재사항 누락	
지적사항/ 주의사항	신탁재산 투자·운용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금지 위반	
	신탁재산 투자·운용	투자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금지 위반	
경영유의사항	신탁재산 투자·운용	자문계약 업무 취급강화 필요	
	신탁재산 투자·운용	부동산펀드 수수료 산정·지급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위 검사결과, 계열회사 발행 고위험채권 편입금지 위반 건은 금융위원회로부터의 과태료 2천만원 부과에 대해 사전납부 하여 20% 경감한 16백만원을 납부하였고, 위 총 6건의 문책, 자율처리 필요사항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서는 관련 임직원에게 대해

2020년 2월 13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조치를 하였습니다.

경영유의사항 중 자문계약 업무 취급강화 필요와 관련하여 자문계약서를 변경 체결하였고, 자문계약을 체결 시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불건전 영업행위의 해당 여부 등을 추가로 사전에 확인하는 등 사전모니터링 절차 강화를 통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위반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부동산펀드 수수료 산정·지급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와 관련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시스템을 정비하고 부동산 및 특별자산 등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규정 개정을 통하여 부동산 관련 발생 비용 및 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산정근거 등을 마련하여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투자자 보호와 금융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것으로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가. 총괄

당사는 보수체계가 회사의 성과와 이에 따른 리스크 구조와 조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로서의 영속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 ·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그 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보수위원회는 이사회내위원회로서 회사의 주요 보수정책을 상기 철학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 관련 내부규정으로 보수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당사 이사회규정 제 10 조 제 1 항을 그 근거로 하여 2015 년 3 월부터 운영되어왔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1 년을 원칙으로 하며, 사외이사인 위원은 연속하여 2 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기만료 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시 위원회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020 년말 기준, 임기 2 년을 초과 재임한 위원은 없습니다.

또한 보수위원회규정 제 9 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보수위원회의 충실한 역할 구현을 위해 당사 보수위원회규정 제 3 조 및 제 4 조에 의거 2 인 이상 5 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인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 년 말 기준으로 당사의 보수위원회는 총 3 인(조세훈, 김지옥, 라케쉬 뱅게일)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 인의 위원이 사외이사이고 조세훈 사외이사가 보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어, 보수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 중 라케쉬 뱅게일 사외이사는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Asia 에서 금융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또한, 조세훈 사외이사는 이룸투자자문 대표로 자산운용업계 전문가로서 보수 관련 재무적 내용 및 회사의 리스크 관리 측면이 심도 있게 다루어 질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조세훈	사외이사	위원장	2020.03.24	2022 개최 정기주총
라케쉬 뱅게일	사외이사	-	2019.03.29	2021 개최 정기주총
김지옥	기타비상무이사	-	2020.01.01	2021 개최 정기주총

다. 권한과 책임

(1) 총괄

보수위원회규정에 의거하여 당사 보수위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받기 위해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사에 외부기관의 자문용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회사의 성과보수체계를 결정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0 년 3 월 24 일 개최된 제 25 제 1 차 보수위원회에서 다음 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

-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019 년도 경영진 성과평가 및 단기성과급 지급(안) 확정 의 건
- 2020 년도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안) 확정 의 건
- 2020 년도 경영진 보수 및 수당 결정 의 건
- 제휴파트너인 BNPP 와 협의하여 선임한 경영진에 대한 2019 년도 성과급 지급(안) 확정 의 건
- 제휴파트너인 BNPP 와 협의하여 선임한 경영진에 대한 2020 년도 보수 및 수당 결정 의 건
- 2019 년도 보수체계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의 건
- 2019 년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건

경영진에 대한 기본급과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를 결정하고 보수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는 2016 년 8 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보수위원회 규정에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결의 사항으로 포함하였습니다. 동 규정을 근거로 보수위원회는 추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는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 일전부터 당사 및 금융투자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거나,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공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의결하는 이사회 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 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계획입니다.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16 년 3 월 30 일 개최된 제 1 회 보수위원회에서 회사의 보수체계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다음의 주요 항목에 대해 운영 현황을 리뷰하고 적정 여부를 평가하였습니다.

- 보수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 보상제도의 설계 원칙 준수
- 변동보상 제도의 운영 및 성과평가 지표

특히 시행 초기인 보수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한 주요 업무 수행 여부, 보상의 설계 원칙 준수 여부, 리스크 관리 및 준법감시, 성과보수제도 운영, 성과평가 지표 등을 집중 심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보수위원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보수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 등을 심의 · 의결하였습니다.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당사는 2016 년 8 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개정된 보수위원회규정에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소집방법, 결의방법, 주요현황을 포함하는 의사결정 절차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보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될 수 있으며,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 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고 정하였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0 년 3 월 24 일 개최된 제 1 회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당사 임원 등의 보수체계가 회사 전체의 재무상황 특히 손익규모 및 자본의 규모 등에 비추어 매우 적절한 수준임을 확인하였으며, 위험수준에 대해서도 크게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보수의 원칙, 설계 및 조정, 이연지급, 성과보수의 지급형태 및 방식, 현금보수 지급, 보수체계 재조정 등 보수체계 관련 법규 전반에 관해 내규 및 운용에서 미준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0 년 3 월 24 일 개최된 제 1 회 보수위원회에서 연차보수평가를 독립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회사의 보수정책 및 운영이 보수체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연차보수평가에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당사 보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하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2 조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이하 동일), 지주회사 보수위원회에서 심의한 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평가 및 보수체계 결정에 관한 사항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지주회사 보수위원회에서 심의한 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평가 및 보수안의 확정에 관한 사항
-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2 조의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말한다)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지주회사 보수위원회에서 심의한 회사의 경영진에 관한 보수체계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회사의 보수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 회사의 위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대상자의 결정
- 지주회사 보수위원회가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범위 내 사외이사 보수의 결정
-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수 대상자의 결정

당사는 2016 년 3 월 30 일에 개최한 제 1 차 보수위원회에서 당시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한 특정업무 종사자의 범위 및 변동보상 대상자를 경영진운영규정에 따른 경영진으로 하며, 추후 본부장 포함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2016 년

8 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당사는 보수위원회규정 제 6 조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임원을 변동보상의 대상자로 우선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적용되어 있으며 해당 범주에 따라 2020 년 12 월말 기준 임원은 대표이사 사장 1 명, 부사장 3 명, 전무 1 명 등 총 5 명(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제외)이며,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현재 그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 중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 년 12 월말 기준>

분류	인원수	직명
임원	5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
금융투자업무담당자	검토중	-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 의사결정 절차

보수위원회는 위원장(조세훈 사외이사)이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일 7 일 전에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목적 사항 등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시 소집절차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일 통지 후 회사내 보수위원회 지원 부서를 통해 각 위원에게 별도의 사전설명 절차를 통해 보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2020 년도 결의사항 중 별도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2) 활동내역 개요

당사는 2020 년 1 월 1 일부터 2020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1 번의 보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각각 일자별 참석위원과 결의안건 그리고 결의 여부는 아래 개최내역으로 상세 기술하였습니다.

(3) 회의 개최내역

(가) 제 1 차 보수위원회

2020년 3월 24일 [안건통지일 : 2020년 3월 14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조세훈	김지옥	라케쉬 뱅게일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제1호 안건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호 안건 2019년도 경영진 성과평가 및 단기성과급 지급(안) 확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3호 안건 2020년도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안) 확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제4호 안건 2020년도 경영진 등 보수 및 수당 결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제5호 안건 제휴파트너인 BNPP와 협의하여 선임한 경영진에 대한 2019년도 단기성과급 지급(안) 확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제6호 안건 제휴파트너인 BNPP와 협의하여 선임한 경영진에 대한 2020년도 보수 및 수당 결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제7호 안건 2019년도 보수체계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이. 제8호 안건 2019년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에 관한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평가

보수위원회는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9조(이사회내위원회) 제4항에 의거 연1회 이사회내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이사회내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당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평가제도 도입 승인을 '16년 12월 제21기 제10차 정기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9년도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2021년 1월에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되며, 보수위원회는 동 평가에서 3등급(보통)을 받았습니다.

구체적 평가항목에는 위원회 개최 빈도의 적정성, 위원회 회의시간의 적정성, 위원회 안건의 범위·깊이 적정성, 당사로부터의 적기에 충분한 정보수령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추후 당사는 매년초 전년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2. 보수체계

가. 주요사항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가) 회사 전체 또는 중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당사는 회사 전체 성과 측정시 수익성 지표(영업순이익, 영업이익경비율 등), 외형 지표(시장 지위, 특정 채널 판매액 등), 고객자산운용성과(유형별 운용 수익률 등)를 주요 측정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경영진의 경우 업적 평가(그룹 KPI 달성도, 회사 KPI 달성도, 담당업무 KPI 달성도, 담당업무 전략과제 등) 및 상급자·동료·하급자 대상 다면평가 등 역량평가 점수를 그 평가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경영진의 경우 회사 전체에 대한 성과측정 지표로 전항 영업순이익, 영업이익경비율 등 재무성과, 고객자산운용성과 등의 지표를 활용하며, 개인 성과측정 지표로서 해당 경영진의 개별 담당업무 KPI 및 비계량부문의 전략과제 이행률 등을 통해 이를 개인 성과보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가)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2020 년 12 월 말 기준으로 당사는 직원 성과급 재원 중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지급금액 중 대부분을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일부 주식으로 4 년간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은 2015 년부터 경영진의 변동보상에 주식연계상품으로 운영되는 장기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였고, 4 년간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일괄 이연지급할 계획입니다. 장기성과급은 부여 이후 4 년간의 평균 성과에 의해 최종 지급 수량이 결정되고, 지급 시점의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주가에 따라 지급 금액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당사 장기성과급 구조상 지급 이전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목표에 미달할 경우 장기 보상 전체 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신한금융지주회사의 가치가 훼손되어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도 자연히 보상금액이 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53 조 등에서 재무 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경영진 등의 성과보상 규모가 조정될 수 있도록 이를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

당사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13 조 제 5 항에 따라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보상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보상으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지급 하여야 합니다. 특히,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담당 업무의 투자성 정도, 투자성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상의 일정비율 이상을 3 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임원의 경우 개인 성과 달성률에 따라 현금 또는 주식 부여수량이 조정되며, 단기 성과보수의 경우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달성률 구간에 따라 성과급 지급 비율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보상의 경우 다음의 사유에 따라 환수 되거나 유보될 수 있습니다.

주요 환수 사유

- 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임한 경우
- 관련법령에 따라 금융감독기관의 해임권고 등으로 해임되거나 면직될 경우
- 장기 보상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한 경우
- 장기 보상을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
- 장기 보상이 압류된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나 손해를 초래할 경우
- 금융감독기관의 감봉 또는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주요 유보 사유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재판 받는 경우
-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기관의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이사회에서 해당 경영진 등에 대해 지급의 유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다) 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당사는 2015 년부터 경영진의 변동보상에 주식연계상품으로 운영되는 장기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4 년간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일괄 이연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기성과급은 부여 이후 4 년간의 평균 성과에 의해 최종 지급 수량이 결정되고, 지급 시점의 신한금융지주회사 주가에 따라 지급 금액이 확정됩니다.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가)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전체 보수액 중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거나 일반직원과 유사하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연봉은 기본급 및 활동수당 등으로 분류하고,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성과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급 등 업무 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인센티브는 성과보수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성과보수 비율은 전체 보수액 중 직무의 특성, 업무책임의 강도, 해당 업무의 투자성, 시장 보상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성과보수의 지급형태는 현금보수(임직원 단기성과급)와 주식보수(임원 장기성과급, 직원 ESOP)로 구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당사는 임원의 경우, 변동 보상을 연간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현금 보상인 연간성과급과 4 년간 회사 장기성과 및 지급시점 주가수준에 따라 변동되는 주식 보상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연간성과급은 회사 성과, 손익규모의 증감, 개인별 업적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 Pool 산정 및 배분을 하며, 장기성과급은 매년 직위별 기본급의 일정 비율의 수량을 부여한 뒤 4 년간 회사 성과 및 주가, 손익규모 증감 등에 따라 그 수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변동 보상을 연간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현금 보상인 연간성과급과 주식 보상인 ESOP 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직원 변동 보상은 회사 KPI 실적에 따라 산정되는 현금 보상 Pool 의 5%를 ESOP Pool 로 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라)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임원의 경우 성과보수액 중 연간성과급은 연간 성과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재원으로 익년도에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장기 성과급은 4 년간의 회사의 장기성과를 고려하여 지급하는 성과 연동형 주식 보상 제도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4)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당사는 성과주의 문화 정착 및 일반 직원의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 함양 그리고 성과공유라는 취지하에서 ESOP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성과급 중 일부를 당사 주식으로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정규직 직원의 전체 현금 보상 Pool 의 5%를 ESOP 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당사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경영진 등 이외 직원의 경우 그 직무가치를 고려하여 회사 손익의 일정 부분을 재원으로 한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당사는 보수위원회규정 제 8 조에 의거하여 보수위원회 위원들에게 외부자문 요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0 년의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당사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58 조에 의거하여 회사 임직원들은 보수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당사는 2017 년 12 월 14 일 이사회 결의에 의거하여 기존 보수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사외이사 보수를 결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 명칭을 기존 보상위원회에서 보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나. 보수 세부사항

(1) 임직원 총보수

당사는 임직원 총보수 관련하여 추후 보수위원회 결의 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당사는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관련하여 추후 보수위원회 결의 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당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관련하여 추후 보수위원회 결의 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2) 성과보수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당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성과보수의 형태 관련하여 추후 보수위원회 결의 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당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이연보수액 보수 구분 관련하여 추후 보수위원회 결의 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당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이연보수액 형태별 구분 관련하여 추후 보수위원회 결의 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당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이연보수액 보수 구분 관련하여 추후 보수위원회 결의 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6) 이연보수의 조정

당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이연보수 조정 관련하여 추후 보수위원회 결의 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당사는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관련하여 추후 보수위원회 결의 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첨부 가. (1) 신한 BNP 파riba자산운용(주) 정관

정 관

개정 : [2009. 1. 02]
개정 : [2009. 6. 12]
개정 : [2010. 6. 30]
개정 : [2012. 4. 15]
개정 : [2012. 6. 21]
개정 : [2015. 3. 03]
개정 : [2016. 8. 01]
개정 : [2017. 3. 31]
개정 : [2019. 3. 29]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이 회사는 “신한비엔피파riba 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Shinhan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Co., Ltd.”라 표기한다.

제 2 조 (사업의 목적) ①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투자자문업무
2. 투자일임업무
3. 투자매매업무(인수업 포함)
4. 투자중개업무
5. 집합투자업무
6. 회사가 집합투자업자로서 관련 법령상 영위할 수 있는 업무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② 회사는 인·허가권자의 인·허가를 얻거나 필요한 등록, 신고, 보고 등을 완료하여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 조 (광고방법) ① 회사의 광고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위 신문에 게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② 관련법률 또는 본 정관에 따라 직접 행하거나 발송을 요하는 (광고 이외) 모든 통지와 보고는 우편 또는 선납 등기우편, 팩시밀리, 텔렉스, 전자우편 또는 케이블을 이용하여 영문으로 행하되 국문 번역본을 첨부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삼천육백만(36,000,000)]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5,000)원으로 한다.

제 7 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육백만(6,000,000)주로 한다.

제 8 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1)주권, 오(5)주권, 일십(10)주권, 오십(50)주권, 일백(100)주권, 오백(500)주권, 일천(1,000)주권, 일만(10,000)주권, 일십만(100,000) 주권의 9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주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기타 단위로 주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 9 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제21조 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제21조 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③ 회사의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신주발행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권리의 행사의사를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0 조 (명의개서 등)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및 기타 주식에 관한 업무절차는 회사에서 정하는 사규에 의한다.

제 11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2 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 13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말일의 익일부터 그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 사업연도말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동의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주 주 총 회

제 14 조 (종류 및 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5 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대한민국의 법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제 16 조 (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팩시밀리, 텔렉스, 전자우편 또는 케이블)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주주전원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팩시밀리, 텔렉스, 전자우편 또는 케이블)로 동의하는 경우 위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제 17 조 (소집지) 주주총회의 장소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이사회는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 대한민국 외의 장소를 주주총회의 소집장소로 정할 수 있다.

제 18 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9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0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1 조 (정족수 및 결의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5분의 3이상의 수로 하되 의결권 있는 모든 주주가 출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안건의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로 하되 의결권 있는 모든 주주가 출석하여야 한다.

1. 회사 영업의 범위나 성격의 변경, 신규 영업의 추가
2. 회사의 정관의 변경
3. 회사 수권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
4. 제3자와의 중요한 합작, 제휴 또는 제3자에 대한 기술적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5. 통상적인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중요한 계약 체결 또는 업무의 집행
6. 일십억원을 초과하는 자산 또는 영업의 취득 또는 처분
7. 일십억원을 초과하는 자본적 지출
8. 총금액이 일십억원을 초과하거나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금액을 초과하는 차입 (여하한 형식의 자금조달)
9. 회사의 연간 예산(핵심 임원에 대한 보수 정책, 급여, 상여금 포함) 및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
10. 당해연도 회사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주석, 보고서 등을 포함한 법령상 요구되는 기타 재무제표의 승인
11. 배당정책의 수립 및 변경, 이익배당 및 이익분배의 승인 및 지급
12. 회사와 BNP Paribas 그룹 또는 신한금융그룹 사이의 중요한 거래, 계약 및 그 중요한 변경
13. 외부감사인의 선임이나 교체
14. 신주의 발행
15. 합병
16. 회사의 자회사 또는 지점의 설치
17. 이사 보수의 결정 및 승인

18. 기존에 존재했거나 새로 체결되는 회사와 이사 간의 거래 또는 그에 관한 중대한 변경
19. 분쟁금액이 일실액을 초과하는 제3자가 연관된 법적 소송이나 중재, 행정적 또는 규제적인 절차의 개시, 협상, 화해; 또는 정부 당국과 관련된 위 절차들(이는 분쟁금액 액수에 관계 없음)의 개시, 협상, 화해
20. 회사의 해산 또는 청산
21. 기타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제 22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국문 및 영문으로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에 비치한다.

제 4 장 이사·이사회·감사위원회

제 23 조 (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6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최소 이사의 수 이상의 홀수의 수로 한다.

② 사외이사는 전체이사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사외이사의 사임 등의 사유로 본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에 요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4 조 (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선임) 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제21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 25 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르며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6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으며 회사 또는 지주회사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임기는 그 임기 중의 최종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2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서 사외이사로의 선임을 금지하고 있는 자는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는 그 재임기간 동안 자회사 등을 제외한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로 선임될 수 없다.

제 27 조 (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보선하며 신규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28 조 (대표이사의 선임) ① 대표이사는 신한금융지주회사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 29 조 (대표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0 조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1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대표이사는 매 분기 1회 이상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각 이사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이사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가 적어도 이사회 개최일의 10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동 기간은 모든 이사의 (우편, 팩시밀리, 텔렉스, 전자우편 또는 케이블에 의한) 서면동의에 의하여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시기와 장소는 대표이사가 정하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국외에서 개최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화상회의를 포함한 법령에서 허용하는 어떠한 형식으로도 소집될 수 있다.

제 32 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주요 사안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두어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이 경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하며, 이사회는 그 결의로 다른 위원회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 보수위원회
4. 위험관리위원회

② 제1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은 법령,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3 조 (이사회 의장)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다.

제 34 조 (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는 이사 4/5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4/5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제 2항의 결의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결의는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

제 35 조 (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국문 및 영문으로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에 비치한다.

제 36 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37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제32조 제1항 제 1호에 따라 설치되는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이 경우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제 1항에 정한 요건에 합치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 이후 최초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할 수 있다.

제 38 조 (감사위원회의 역할) ①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으로 이사회 소집권자에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회 소집권자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38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39 조 (결의방법)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3/4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40 조 (부회장 등) 회사는 부회장, 고문 등을 둘 수 있다.

제 41 조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회사는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업무집행책임자로 선임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하며, 그 임기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회 계

제 42 조 (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3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회사의 회계장부 및 기록은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에 따라 영문과 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회사는 주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에서 공표한)에 따라 조정한 회사의 회계장부 및 기록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주주는 이러한 회계장부, 기록 및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②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호의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2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각호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회사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2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4 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연도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 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차기이월액
6.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 45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며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은 주주총회가 결의하는 경우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단, 주식에 의한 배당에 관련된 주식의 총액면가는 당해 사업연도에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 46 조 (중간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가 정하는 날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단,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사업연도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사업연도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 사업연도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의 경우 등)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47 조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 6 장 보 칙

제 48 조 (규 정) 회사는 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 회사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중요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제 49 조 (상법 및 금융투자업 관련법령의 적용) 본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상법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 50 조 (언 어) 본 정관의 국문본과 영문본을 동등한 정본으로 한다. 단, 의미의 차이가 있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문본이 우선한다.

부 칙 ([2009. 1. 2.])

1. (시행일) 본 정관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제2조의 규정은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단위에 대한 등록 및 인가가 발효된 날부터 시행하며, 그 때까지는 본 개정 전 정관(2005. 6. 30.자 신한 비엔피파리바 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의 것)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8조의 경우 201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가. (2) 신한 BNP 파riba자산운용(주) 이사회규정

이사회 규정

제정 2009.01.02

개정 2009.06.12

개정 2010.06.30

개정 2012.06.21

개정 2012.12.18

개정 2014.09.25

개정 2015.03.03

개정 2016.08.01

개정 2017.03.31

개정 2018.02.27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 4 조(경영진의 정의)

이 규정에서 경영진이란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2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 조(역할)

- ①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 한다.
- ② 이사회는 회사경영의 건전성을 위하여 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한 내부통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경영진이 자금세탁방지과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를 위해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정책을 감독하고 자금세탁방지과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와 관련한 경영진과 감사위원회의 평가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검토 및 승인한다.

제 6 조(선임 및 해임)

- ① 대표이사는 신한금융지주회사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이사회 의장)

- ①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다.
- ② 이사회 의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 2.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 회사로부터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3.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제 8 조(이사의 권한 및 의무)

-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이사는 주주전체의 이익보호 및 회사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법령과 정관에 따라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④ 이사가 제 3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 3 자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회사 또는 제 3 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9 조(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 3 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성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 1. 이사 또는 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6 호에 따른 주요주주
- 2. 제 1 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3. 제 1 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4.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 5.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자가 제 4 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제 10 조(이사회내위원회)

- ① 이사회는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이사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위원회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각 위원회의 위원은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면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③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로 정하는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④ 제 14 조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11 조(소집)

- ① 정기 이사회는 매 분기 1 회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권자가 소집의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소집한다.
- ② 제 1 항의 소집권자는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는 그 이사로 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그 소집목적에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우편, 팩시밀리 전송, 전자메일 등 송수신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이사회 개최일 10 일 전에 각 이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사전 동의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④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 조의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제 12 조(의안의 배부)

- ① 이사회의 의안은 회의 개최 최소 7 일전에 전 이사에게 배부되어야 하며, 위원회의 의안은 회의 개최 최소 7 일전에 위원회 각 구성원 및 기타 위원회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② 의안의 배부 방식은 직접 전달하거나 팩스 송신, 전자메일 송신 등 송수신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한다.
- ③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 1 항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의안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제 13 조(결의사항 등)

-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결의 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내의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A.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B. 주주총회에 부의 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정관 및 중요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A. 정관
 - B. 이사회규정, 이사회내 위원회 규정
 - C. 지배구조 내부규범, 경영진운영규정, 경영진평가 및 보수규정, 경영진퇴직위로금규정, 내부통제기준, 내부회계관리규정
3.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 A. 신주의 발행
 - B. 준비금, 잉여금, 적립금의 자본 전입
 - C. 실권주 및 단주 처리에 관한 사항
4. 경영의 기본에 관한 사항
 - A. 경영의 기본 방침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B. 경영진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C. 경영진의 평가지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 D. 조직·인사·급여에 관한 기본체계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E. 점포의 이전 및 폐쇄
 - F. 자본시장법상의 신규사업에의 진출
 - G. 대표이사 아닌 경영진 및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 H. 위원회의 설치, 개폐 및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5. 중요한 계약 등에 관한 사항
 - A. 업무용 동산, 부동산의 취득, 처분의 경우
 - B. 1 건당 5 억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의 체결
(단, 기존계약을 갱신하는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직전 계약금액의 10% 범위 이내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함)
 - C. 1 건당 3 억원을 초과하는 경비 지출
 - D. 해산, 영업양도 및 합병 승인
 - E. 기타 중요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 6. 이사 등에 관한 사항
 - A. 사외이사의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 B. 상법 제 398 조에 따른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사항
 - C.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위의 결정
 - D. 대표이사 직무대행의 결정
- 7. 기타 사항
 - A. 감독기관의 인·허가 또는 금융기관의 자금차입
 - B. 준법감사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C. 주주총회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D.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E. 회사의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F.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내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 중 재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G. 대표이사가 특별히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H.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
- ② 대표이사 및 이사회 산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및 그 실적
 - 2.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결과와 그 실적분석
 - 3. 다른 규정에서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 4. 경영성과, 분석 및 현황
 - 5. 기타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각 이사회내위원회 규정의제, 개정을 통해 권한 위임을 한 사항은 해당 이사회내위원회의 권한으로 한다.

제 14 조(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4/5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이사 4/5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이해관계를 이사회에 밝혀야 하며 당해 결의에 관하여 이사회가 행하는 심의나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제 1 항의 결의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결의는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15 조(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16 조(관계자의 출석)

이사회와 각 위원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7 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사외이사가 이사회 활동을 위해 외부기관의 법률, 회계, 경영 관련 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8 조(보수 등)

이사회 이사 중 경영진이 아닌 이사에 대하여 이사회내위원회 참여도 등 활동실적에 상응한 보수(수당 포함)를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비, 자료수집비 등 별도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년 1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년 6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 년 6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 년 6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 년 12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 년 09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 년 03 월 0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 년 08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 년 03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 년 02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정: [2015. 03. 03]

개 정: [2016. 08. 01]

개 정: [2016. 09. 22]

개 정: [2017. 03. 31]

개 정: [2017. 12. 14]

개 정: [2018. 03. 29]

개 정: [2018. 11. 01]

개 정: [2019. 02. 14]

개 정: [2020. 03. 24]

개 정: [2020. 06. 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범은 신한BNP파riba자산운용(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범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그룹”이라 함은 신한금융지주회사(이하 “지주회사”라 한다)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신한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자회사등을 말한다.
2. “자회사”라 함은 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SHINHAN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를 말한다.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 가. 「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이하 “은행”이라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

4. “상법상 회사”란「상법」제169조의 회사(「상법」규정을 준용하는 특별법에 의한 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6.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7. “사외이사”란「상법」제382조 제3항의 사외이사를 말한다.
8. “겸직 비상임이사”란 그룹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9.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대표이사·회장·은행장·사장·부사장·부사장보·부행장·부행장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 및 자회사등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최고경영자”란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역할과 지위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11. “이사회등”이란 상법 제390조에 따른 이사회 및 같은 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를 말한다.
12. “경영진”이란 임원 중에서 대표이사와 부사장을 말한다.
13.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란 금융회사의 위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 · 판매 · 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보수위원회가 심의 · 의결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14. “성과보수”란 성과에 연동(連動)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를 의미한다.
15.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란 회사가 제60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 및 지배구조 운영 등에 관하여 매년 작성하여 공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16.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란 회사가 제60조 제2항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하여 매년 작성하여 공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17. “준법감시인”이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이사회의 권한 및 책임)

-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자회사를 포함한 경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개정시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이사회규정에 명시된 중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조직의 중요한 변경 및 계약에 관한 사항
 5.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
 6.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 이해상충 행위의 감독에 관한 사항
 7.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회사의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수립·평가 및 상시적인 최고경영자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및 그 실적
 2.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결과와 그 실적분석
 3. 다른 규정에서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4. 경영성과, 분석 및 현황
 5. 기타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이사회는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과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④ 이사회가 각 이사회내위원회 규정의 「결의사항 등」의 제·개정을 통해 권한 위임을 한 사항은 해당 이사회내위원회의 권한으로 한다.

제5조(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 ①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다.
- ②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 회사로부터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제6조(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임시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 ②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회일 10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는 이사 4/5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이사 4/5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이해관계를 이사회에 밝혀야 하며 당해 결의에 관하여 이사회가 행하는 심의나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제 1항의 결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결의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8조(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

이사회는 연1회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이사회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운영에 참고하며,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절 이사회내위원회

제9조(이사회내위원회)

- ① 회사는 이사회내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1. 감사위원회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 보수위원회
 4. 위험관리위원회
- ② 이사회내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결의로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다만, 제1항 각호 중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에 한한다.
- ③ 이사회내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 ④ 이사회내위원회는 연1회 해당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며,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0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이하 이 조에서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한다.
- ② 감사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의 수가 제1항에 따른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에 따른 구성요건을 만족하도록 조치한다.
- ③ 감사위원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 요청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제11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선임한다.
- ③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대표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 2.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 3. 감사위원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 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4항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내역을 연 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⑥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이 스스로를 임원으로 추천하지 못하며,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이사회등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2조 (위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 ① 위험관리위원회는 2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 ②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수립
 - 2. 회사의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 3.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 4.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 5. 리스크관리 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6. 리스크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7.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 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이사회 및 위험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보수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 ① 보수위원회는 2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 ② 보수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 ③ 보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업무집행책임자(제2조의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하며 이 조에 한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경영진의 평가 및 보수체계 결정에 관한 사항
 - 2.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업무집행책임자, 경영진의 평가 및 보수안의 결정에 관한 사항
 - 3.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4.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업무집행책임자, 경영진의 보수체계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5. 회사의 보수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 6.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결정

7.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범위 내 사외이사 보수의 결정
 8.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회사는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보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⑤ 회사는 임원 및 직원(최하위 직급의 직원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보수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移延)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에 연동하는 보수의 비율, 이연 기간 등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보수 중 성과보수의 비율은 성과평가와 연동하고, 그 비율은 책임의 정도, 직무의 특성, 담당 업무의 투자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따라 달리 할 것
 2.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업무집행책임자는 담당 업무의 투자성 정도, 투자성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3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할 것. 다만, 담당업무의 투자성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성의 존속기간 수준으로 이연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할 경우에는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배분한 수준보다 작도록 할 것
 4.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업무집행책임자의 성과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은 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급할 것

제14조(이사회내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사외이사는 보수위원회 및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회내위원회에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이사회내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이사 및 최고경영자

제1절 이사

제15조(이사의 선임 및 퇴임)

- ① 사외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독립성 요건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로부터 금융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대표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④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⑤ 비상임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⑥ 주주총회는 이사가 이사로서 신분을 유지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임할 수 있으며, 이사는 사임, 임기만료,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등의 사유에 의하여 퇴임한다.

제16조(이사의 자격요건)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소비자 보호, 정보기술, 회계 및 법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 ② 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은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 ③ 사내이사의 자격요건은 본 규범 제35조를 따른다.
- ④ 비상임이사는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제17조(이사후보 추천절차)

-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이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시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최대한 활용한다.
-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 추천서에 제24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한다.

제18조(사외이사 후보추천 내역의 공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통지에 갈음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일)을,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안내한다.

1. 사외이사후보 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약력
3. 사외이사 후보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
4. 사외이사 후보자와 회사 및 자회사(그 임원 및 대주주 포함)와의 관계
5. 관계법령 및 제16조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6.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7.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8. 그 밖에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9조(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정하며, 연임될 수 있다.
 1. 사외이사 : 2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
 2. 사내이사 및 비상임이사 : 3년 이내

- ② 제1항의 임기는 그 임기 중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③ 이사가 재임하기 위해서는 이사 재임기간 동안의 제23조에 의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사외이사는 6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으며, 회사 또는 지주회사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할 기간을 합산하며 9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 중의 해당연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재임함에 따라 재임기간이 해당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사외이사의 역할)

사외이사는 이사회등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1조(이사의 자료요청권 등)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이사의 책임)

- ① 이사는 이사회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사회등이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한다.
- ② 사외이사는 제1항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일정시간 이상을 이사회등에의 참여에 할애한다.
- ③ 이사는 재임기간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 및 자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 ⑤ 회사는 매년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하여 이사 재임시의 활동에 대해 퇴직 후에도 통상적인 책임보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⑥ 회사가 제5항에 따라 가입·갱신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사외이사의 자기부담액을 배상책임액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기부담액의 최대 한도는 1억원으로 한다.
- ⑦ 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하 이 항에서 “사외이사등”이라 한다)이 수탁자·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수탁자·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등”이라 한다)이 회사(그룹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기부금(이에 준하는 혜택을 포함하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기 이전에 회사가 회원·사원 등으로 참여한 비영리법인등의 정관 등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기부금·출연금 등은 제외한다. 이 항에서 “기부금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해당 사외이사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소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 1. 사외이사가 회사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된 경우 선임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할 것
 - 2. 사외이사가 선임된 이후 사외이사등이 비영리법인등의 수탁자·임직원이 되는 경우 수탁자·임직원이 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할 것

제23조(이사에 대한 평가)

- ① 회사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사외이사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다.
- ② 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제1항에 따른 평가 실시 여부와 그 결과를 공시한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한다.
- ④ 사내이사에 대한 평가는 본 규범 제41조를 따른다.
- ⑤ 비상임이사에 대한 평가는 사외이사의 평가를 따른다. 다만, 겸직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이사의 보수)

- ① 이사회는 사외이사의 이사회내위원회 참여도 등 활동실적에 상응한 보수체계를 수립한다.
- ② 사외이사의 보수는 기본 수당, 직책 수당, 회의 수당, 참가 수당 등으로 구성하며,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사내이사의 보수는 본 규범 제42조를 따른다.
- ④ 비상임이사의 보수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따른다. 다만, 겸직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 및 제휴 파트너인 BNPP 임직원인 사외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5조(사외이사 지원부서의 운영)

- ① 회사는 사외이사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관리 담당 부서가 사외이사 지원부서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 ② 경영관리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제5조 제2항에 따른 선임사외이사의 업무 지원
 - 2. 제11조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업무 지원
 - 3.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지원
 - 4.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검증 업무 지원
 - 5.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 ③ 경영관리 담당 부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제2항 제2호 중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관련한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한다.

제26조(이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 ① 회사는 이사가 회사와 자회사등의 경영실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사와 자회사등의 업무집행상황 등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한다.
- ② 이사가 경영정보의 보고 또는 제공을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 ③ 회사는 이사회등의 회의자료를 회일 2주일 전까지 발송하여 해당 이사회등에 참여하는 사외이사가 회의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이사에 대한 자문용역의 제공)

회사는 이사가 회사와 자회사등에 대한 이사회등의 활동을 위해 외부기관의 법률·회계·경영 관련 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한다.

제28조(이사에 대한 교육)

- ① 회사는 신임 이사에 대하여 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보고 등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대신할 수 있다.
 - 1. 회사 또는 자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중에서 선임된 경우
 - 2. 다른 금융기관의 재직 경력 등으로 업무 전문성을 인정받아 선임된 경우
- ② 회사는 이사를 위한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한다.

제2절 최고경영자

제29조(최고경영자의 자격)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 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최고경영자로 선임한다.

제30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 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은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경영승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2. 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 3.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 4.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 5.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 방법
 - 6. 최고경영자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행자 선정, 신임 후보 선임 등 비상계획
 -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선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이사회는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소속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 평가 및 개발활동 결과를 연 1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31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

경영관리 담당 부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제32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 ① 회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하여 관계법규와 이 규범 제29조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 ②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로 추천하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제33조(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및 회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한다.

1. 최고경영자후보추천절차 개요
2.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및 회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최고경영자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4조(책임경영체제 확립)

- ① 회사는 경영진의 임기를 상당 기간으로 하고 경영진(등기 임원 제외)의 선임과 해임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거나 이사회에 보고를 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의 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한다.
- ② 회사는 능력에 근거한 경영진의 선임, 역할의 명확화, 필요한 권한의 위임 등을 통하여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경영진의 임면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해임 및 퇴임사유 등은 경영진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경영진에 관한 사항

제1절 경영진의 자격요건

제35조(경영진의 자격요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영진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대표이사는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 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③ 대표이사 아닌 경영진은 도덕성을 갖추고,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통해 회사의 건전한 경영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2절 경영진의 권한과 책임

제36조(권한과 책임)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에 결의 사항을 집행하며 다음 각호의 역할을 담당한다.
 1. 이사회장으로서 이사회의 운영(사장이 이사회장으로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
 2. 주주, 관련기관 등 회사의 이해관계인과의 의사교류 원활화를 위한 역할
 3. 회사 업무 전반의 총괄 및 이해관계인과의 조정 역할
 4.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요청하는 역할
- ② 대표이사 아닌 경영진은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고 소관업무 일체를 관장한다.
- ③ 경영진은 이사회와 이사회내의 각 위원회 및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 하여야 한다.
- ④ 경영진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3절 경영진의 선임과 해임과 관한 기준 및 절차

제37조(경영진의 선임 및 해임)

- ① 대표이사는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대표이사 아닌 경영진은 주주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③ 이사회는 자질, 업적, 역량 등을 감안하여 경영진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경영진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경영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경영진 직위에서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1. 법규, 정관, 내규, 위임계약서에 명시된 의무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경영진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회사와 경영진간에 체결된 위임계약서에서 해임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제38조(업무대행자 선임 등)

- ①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전략기획, 재무기획, 리스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진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결의하는 경영진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 외의 경영진의 유고 시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경영진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임기)

대표이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에 따르며 대표이사 아닌 경영진의 임기는 2년의 범위 이내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절 경영진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제40조(경영진 등에 대한 교육 및 평가 활용)

- ① 회사는 경영진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하여 전략, 리더십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경영진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제도를 운영하며, 그 평가결과를 경영진 선임시 고려한다.

제5절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제41조(경영진의 성과평가)

- ① 경영진에 대한 평가는 보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② 경영진에 대한 평가는 계량적인 평가 외에 정성적인 평가를 병행하며, 담당업무 성과 외에 회사등 조직 단위의 업무성과와 연동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③ 경영진에 대한 평가결과는 보수의 지급이나 재선임 또는 해임시에 활용한다.

제42조(경영진의 보수)

- ① 경영진의 보수는 보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② 경영진의 보수는 연봉(기본급, 단기성과급)과 활동수당으로 하며, 보수와는 별도로 성과연동형 장기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감사위원회

제43조(기본원칙)

-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는다.
- ② 감사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한다.

제44조(감사위원회의 권한 등)

-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제공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그 밖에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② 경영진은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45조(감사보조조직)

- ① 감사위원회에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업무 담당 부서를 둔다.
- ② 감사업무 담당 부서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조한다.
- ③ 회사는 효율적 감사를 위하여 적절한 인력으로 감사 업무 담당 부서를 운영한다.
- ④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상근감사위원)

-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상근감사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상근감사위원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감사 등의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1.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따른 일상감사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3. 감사실시 등 내부감사 업무 통할
 4.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제47조(이사회에 대한 보고)

- ① 감사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감사실시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 ① 상근감사위원은 위임받은 사항 및 주요 업무수행과정에서 보고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6장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제49조(기본원칙)

- ① 보수위원회는 회사의 보수관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보수체계가 리스크 구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보수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과도한 성과보수 지급으로 회사 및 자회사의 자본적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③ 회사는 건전한 성과주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다양한 성과 연계 보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합리적으로 임직원의 보수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한다.

제50조(보수위원회 활동의 서류 보존)

회사는 보수위원회의 설치·운영 내역과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부서의 관리·감시활동내역을 서류로 보존한다.

제51조(보수와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 ① 회사는 풍부한 경험과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가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담당자로 채용·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② 회사는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부서가 회사의 보수 관련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하고, 리스크 관리 및 준법감시 업무가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시 대상이 되는 분야의 성과와는 독립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보수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52조(성과보수의 원칙, 설계 및 조정)

- ①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업무집행책임자(제2조의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하며, 이 조에 한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보수 중 성과보수 비율은 성과평가와 연동하고, 그 비율은 책임의 정도, 직무의 특성, 담당업무의 투자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따라 달리한다.
- ②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한 보수의 상당부분을 성과보수로 하고, 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한 성과에 따라 보수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③ 회사는 재무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업무집행책임자의 성과보수 규모가 조정될 수 있도록 보수제도를 설계한다.

제53조(이연지급)

- ①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업무집행책임자(제2조의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하며, 이 조에 한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성과보수는 담당 업무의 투자성 정도, 투자성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3년 이상 이연지급한다. 다만, 투자성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성의 존속기간 수준으로 이연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단기 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 성과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한다.
- ③ 이연지급 시 이연기간 중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 배분한 수준 보다 작도록 한다.
- ④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하여 재산정한다.

제54조(성과보수의 지급형태 및 방식)

- ① 회사는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업무집행책임자(제2조의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하며, 이 조에 한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성과보수 중 상당부분을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 등

회사의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급한다.

- ② 회사는 주식 또는 주식연계 상품에 대하여 부여시점 이후 최소 일정 기간 동안 지급이 유보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회사는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장기보수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④ 성과보수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오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하여 정정되는 경우 기지급된 성과보수는 정정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제55조(현금보수 지급 등)

- ① 이연지급된 보수 중 주식 및 주식연계상품 등의 방식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제외한 잔여 부분은 점진적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현금보수로 지급될 수 있다.
- ② 지급확정기간 중 회사는 재무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급 미확정 부분을 재무성과나 손실규모 등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제56조(보수체계 재조정)

회사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특별한 개입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정부의 조치에 따라 보수체계를 건전한 리스크관리 및 장기성장과 연계되도록 재조정할 수 있다.

제57조(보장형 상여 및 과도한 퇴직 관련 보수의 제한)

- ① 회사는 보장형 상여를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규 임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최소의 보장형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1년으로 한정한다.
- ② 회사는 과도한 퇴직 관련 보수로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창출 및 리스크관리의 건전성을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제58조(개인적 리스크회피 전략 등 금지)

회사 임직원들은 보수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개인적 리스크회피 전략 또는 보수 관련 보증을 활용하여서는 안된다.

제59조(성과평가 지표)

- ① 회사는 단기적인 외형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장기 성과와 수익성, 건전성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계량화되지 않은 평가지표를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경영진의 성과평가 지표를 설정하며, 계량화되지 않은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 1. 단기적인 외형 및 자산 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건전성 및 수익성 관련 지표를 반영
 - 2. 수익성 지표를 사용할 경우 비경상적인 요인들은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위험을 감안한 수익성 지표를 반영
 - 3. 재무적 지표 이외에 비재무적 지표로서 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다양한 지표를 반영
 - 4. 회사의 성과를 장기간에 걸쳐 측정·평가하고 장기성과의 지급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연지급 성과보수 제도를 활용

5. 내부목표 달성 외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간 비교 가능한 성과지표를 반영

제6장 공시

제60조(정기공시)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작성한다. 지배구조연차보고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회사가 속한 관련 협회 등의 장이 정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 기준에 따른다.
 1.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지배구조 내부규범 등) 및 지배구조 현황
 2.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등에 관한 다음의 각 목의 사항
 - 가.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등의 역할, 책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 나.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 다.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부의장이 있는 경우 부의장, 선임 사외이사가 있는 경우 선임 사외이사, 그 밖의 구성원 명단 및 경력
 - 라.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회의개최 횟수 및 이사들의 개인별 참석 현황
 - 마. 최고경영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이유
 3. 사외이사후보추천에 관한 다음의 각 목의 사항
 - 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
 -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명단 및 약력
 - 다. 사외이사 후보의 자격요건, 후보추천 절차, 사외이사 업무수행 평가방식 등 사외이사 선임기준
 - 라. 사외이사 후보자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
 - 마. 사외이사 후보와 회사 및 자회사(그 임원 및 대주주 포함)와의 관계
 - 바. 법에 따른 사외이사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 사.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및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 아.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 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과 관련하여 보고한 내용
 - 카. 경영관리 담당 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 후보군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 타.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한 사외이사후보추천 관련 사항
 4. 사외이사의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의 각 목의 사항
 - 가.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의 회의일시, 보고안건을 포함한 안건내용,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위원회 참석 및 찬성 여부
 - 나. 사외이사에 대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현황
 - 다. 사외이사에 대하여 제공한 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실시 현황
 - 라. 관련 법령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
 - 마. 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하 이 호에서 “사외이사등”이라 한다)이 수탁자·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수탁자·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 등의 제공내역

- 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근거로 한 평가 개요 및 평가 결과
- 사. 사외이사 지원부서 지정 및 운용현황
- 아. 사외이사 개인별 재직기간
- 자. 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총액 및 내역
- 차. 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 카. 회사와 사외이사등 소속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 타.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 나.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절차 개요
 - 다.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 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가 진행된 경우 내역
 -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내역
 - 바. 이사회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 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현황
- 6.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
 - 나.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명단 및 약력
 - 다. 최고경영자 후보의 자격요건, 후보추천 절차 등 최고경영자 선임 기준
 - 라. 최고경영자 후보자와 제안자와의 관계
 - 마. 법에 따른 최고경영자 자격 요건 충족 및 근거
 - 바.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이유 및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 7. 감사위원 후보 추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
 -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명단 및 약력
 - 다. 감사위원 후보의 자격요건, 후보추천 절차, 감사위원 업무 수행 평가방식 등 감사위원 선임 기준
 - 라. 감사위원 후보자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
 - 마. 법령에 따른 감사위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 바.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한 감사위원 후보 추천 관련 사항
- 8. 감사위원회 활동내역
- 9. 위험관리위원회 활동 내역
- 10. 지배구조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권고·지시한 사항 및 회사의 개선 내용 또는 계획
- 11.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작성한다.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회사가 속한 관련 협회 등의 장이 정하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기준에 따른다.
 - 1. 보수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책임을 포함한 회사의 보수체계 의사결정 절차
 - 2. 성과측정 및 위험 조정 기준,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 이연, 지급확정 및 환수기준, 현금과 주식, 그 밖에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등을 포함한 보수 체계의 주요 특성
 - 3. 회계연도 중 보수액(기본급 및 성과보수를 구분하고 대상 임직원수를 포함한다)

4. 성과보수 금액 및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및 기타로 구분한다)
 5. 이연된 성과보수(지급이 확정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한다)
 6. 이연된 성과보수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
 7. 회계연도 중 지급된 퇴직 관련 보수금액, 해당 임직원 수 및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8. 회계연도 중 임직원에게 지급된 보수금액, 직급별 보수액 및 성과보수액
- ③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는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해당 회사 및 관련 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등이 직전년도에 발생한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년도 성과보수는 이를 결의하는 이사회 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한다.

제61조(수시공시)

- ① 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 포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 ② 회사는 제14조의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시한다.

제62조(주주총회)

- ① 회사는 사외이사 관련 주주총회 안건 상정 시 사외이사후보추천 등 성격이 상이한 안건들을 포괄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개별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 의장, 이사회내위원회 위원장은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들의 질의에 답변한다.
- ③ 회사는 주주총회가 종료된 후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행사 주식수, 안건별 찬·반 주식수 비율 등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제63조(공시방법)

이 규범에 따른 공시는 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제7장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등

제64조(내부통제체제)

- ① 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한다.
- ②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주회사 그룹내부통제규정에서 정한다.

제6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 ①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두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한다.
- ③ 회사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 ⑤ 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66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 1.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원장, 그 밖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가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라목 후단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라목 전단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2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과 같은 법 제36조의 3에 따른 정리금융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준법감시인이 된 사람이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67조(리스크관리체제)

- ① 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한다.
- ②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주회사 그룹리스크관리규정에서 정한다.

제6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 ① 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한다.

- ②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명한다.
- ③ 회사가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 ⑤ 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69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 ①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 1.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관련 기관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위험관리책임자가 된 사람이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70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금지 등)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 2. 회사의 본질적 업무(해당 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 3. 회사의 겸영(兼營)업무
- 4. 자회사등의 업무(위험관리책임자가 자회사등의 리스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
- 5.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71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한다.
- ③ 회사 및 임직원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한다.

- ④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였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부 칙(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15년 03월 0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등)

- ① 제19조의 규정은 이 규범 시행 후 선임(재선임과 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한다.
- ② 이 규범 시행 후 선임되는 사외이사의 제19조 제4항에 따른 총 재임기간 산정과 관련해서는 이 규범 시행 전 재임한 기간에 대해서도 제19조 제5항, 제6항을 적용한다.
- ③ 회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임기 등을 고려하여 이 규범 시행 후 최초로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제20조에 따른 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그 이유와 준수계획을 주주총회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공시한다.
- ④ 이 규범 시행일 현재 사외이사로 재임 중인 자도 제23조 제7항 제1호와 관련해서는 이 규범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초로 선임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규정) 이 규범의 시행과 동시에 「사외이사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1)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16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16년 0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3)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17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4)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17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5)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18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등)

이 규범 시행 후 선임되는 사외이사의 총 재임기간 산정과 관련해서는 이 규범 시행 전 재임한 기간에 대해서도 제19조 제4항을 적용한다.

부 칙(6)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19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2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2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위원회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에 설치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 ① 위원회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2018.3.30)
- ②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과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조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 3 조 (역할)

위원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무감사, 업무감사, 준법감사, 경영감사, IT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및 개선방안 제시
2.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3.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
4.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5.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7.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등

제 4 조 (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경영진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녹취, 물품 등에 대한 실사 및 봉인 요구
4. 거래처에 대한 회계관계 제반자료 요구
5. 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관련 임직원에게 징계 요구
6.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 5 조 (의무)

위원회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 6 조 (독립의 원칙)

- ① 위원회는 이사회, 집행기관 및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 위원은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또는 자회사등으로부터 자문, 기타 보상적 수수료를 수령하거나, 회사 또는 자회사등과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있어서는 아니된다.(2015.3.3 개정)

제 7 조 (보고 등)

-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회 의결사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 한다
- ④ 위원회는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6.8.1 개정)

제 2 장 구 성

제 8 조 (선임 및 구성)

- ① 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2015.3.3 개정)
- ② 위원회의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 9 조 (위원장 및 간사)

- ① 위원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이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순 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2018.3.30)
- ④ 감사부서의 부서장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제 10 조 (위원회의 권한 위임)

- ① 감사위원의 미착임, 출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고 사안이 긴급한 경우 감사부서의 부서장이 이를 대행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2018.3.30)

- ② 제16조의 위임사항 및 위원회가 위임을 결의한 사항은 감사부서의 부서장이 전결처리하고 이를 다음 위원회에 보고한다. (2018.3.30)
- ③ 일상 감사대상 이외의 문서 중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중요한 문서가 있을 경우 이를 감사부서의 부서장이 공람한다. (2018.3.30)

제 3 장 회 의

제 11 조 (회의의 종류 및 소집절차)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 ② 정기회의는 분기당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된다.
- 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⑤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 소집을 못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 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는 감사위원 3/4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018.3.30)
-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018.3.30)
-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의할 수 있다. (2012.6.21개정)
- ④ 위원회의 안건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부의사항 등)

- ① 위원회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요구
 - 나.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의견 진술
 -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가. 이사회에 대한 보고사항
 - 나.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 다.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 라.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 마. 임시이사회 소집 요구
 - 바.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3. 감사에 관한 사항
 - 가. 감사계획의 수립
 - 나. 내부감사 실시와 관련한 위임 사항

다. 감사부서장 임면에 대한 동의 및 업무성과평가 (2018.3.30)

라.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 요청 (2018.11.01.)

마.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

사.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4. 기 타

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

나. 관계법령, 정관 또는 기타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다.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기준의 제정 및 변경

나. 회사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다.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

라.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2. 기 타

가. 관계법령, 정관 또는 기타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나.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4 조 (관계인의 출석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5 조 (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4 장 감사 및 보고

제 16 조 (감사의 위임)

① 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부서의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부서의 부서장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8.3.30)

1. 연간감사계획에 의한 세부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확인

3. 감사실시 등 내부감사 업무 통할

4. 기타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 17 조 (준법감시인관련 사항)

- ① 위원회는 준법감시인이 수행한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다.
 - 1.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한 주기적인 점검 및 상시 감시업무
 - 2. 기타 관계법령, 정관, 대표이사,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업무
- ② 위원회는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평가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내부통제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시정조치를 대표이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18 조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 ① 감사부서의 부서장은 제16조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2018.3.30)
- ②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2016.8.1 개정)

제 5 장 보 칙

제 19 조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외부 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0 조 (감사보조조직)

- ① 회사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감사부서를 둔다.
- ② 감사부서는 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조한다.
- ③ 감사부서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내부감사절차 등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 21 조 (감사업무 외부위탁시의 특칙)

외부전문기관에 감사업무를 위탁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부전문기관을 이 규정에 의한 감사보조조직으로 본다.

제 22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정 : 2016.08.01

개정 : 2018.02.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②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소집)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결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대표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2.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3. 감사위원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대표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관계법규와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9조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제7조(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 등) 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관계 법규 및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증한 후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제8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자신이 후보가 되는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결권 수를 출석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경우 당해 위원의 의결권 수는 재적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8.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등) 이 규정은 시행 후 선임(재선임과 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 02. 27 부터 시행한다.

첨부 가. (6)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주) 보수위원회규정

보수위원회규정

제 정: [2015. 03. 03]

개 정: [2016. 08. 01]

개 정: [2017. 12. 14]

개 정: [2019. 02. 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이사회규정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한 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위원회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하며 경영진 등의 평가·보수체계가 건전하게 수립, 운용되도록 관리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2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②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조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또는 상법상 회사(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조의 상법상 회사를 말한다.)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③ 사외이사인 위원은 연속하여 2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시 위원회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다만,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에 한한다.

②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소집)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결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조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이하 동일), 경영진의 평가 및 보수체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경영진의 평가 및 보수안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조의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말한다)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경영진의 보수체계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회사의 보수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6. 회사의 위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 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한 대상자의 결정
 7.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범위 내 사외이사 보수의 결정
 8.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8조(관계인의 출석, 관계자료 제출 및 외부자문)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진 및 관계 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의 계약 체결 및 해지는 전적으로 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제9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3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 정 : 2016.07.28

개정(1): 2017.05.18

제 1 조 (목적)

①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험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며 회사의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기타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제 3 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2 인 이상 5 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총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 ② 위원 중 1 인 이상은 금융회사(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2 조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또는 상법상 회사(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2 조의 상법상 회사를 말한다.)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 1 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제 4 조 (소집)

- ① 위원회는 분기 1 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 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소집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서면으로 결의(보고 포함) 할 수 있다.

제 5 조 (심의·의결사항 등)

-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2.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7 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6. 리스크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규정의 제정 및 개정
9.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라 결의한 사항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실무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해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 6 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7 조 (관계인 출석)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진 및 관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8 조 (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9 조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리스크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년 5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나.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후보 검토보고서

성 명	총 합 의 견
디디에 뚜슈 (Didier TOUCHE)	적합

본 위원회는 상기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2020년 3월 24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탁 승 훈 ( 날인)

후보자	<u>디디에 투슈(Didier TOUCHE)</u>	소속법인	BNP Paribas AM France
-----	------------------------------	------	--------------------------

※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 및 내부규범 준수 여부

상법 제382조 제3항 - 주식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제3항 - 금융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6조 제1항, 제2항 -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9조 제4항 - 사외이사 임기제한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자격요건 주요 항목

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해당여부	비 고
회사 또는 자회사등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최대주주와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임원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극적 자격요건 (주요 사항)	해당여부	비 고
소속 법인 자본의 10% 초과여신거래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속 법인 및 본인의 자문거래 및 용역거래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당사 외 둘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적극적 자격 요건	충족여부	비 고
전문성	충족	- 금융/회계 전문가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충족	-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평가결과	사외이사 업무수행 능력 우수 (직무에 대한 기대 수준 이상)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TEL: 02-767-5777

www.shinhanfund.com